

최종보고서

충남 농촌유희공간 활용실태 및 민관협력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2021. 11.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이 연구는 2021년 충청남도의회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의견 등은 충청남도의회 공식 의견이 아니고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힙니다.

제 출 문

충청남도의회 귀하

충청남도 농촌유희공간 활용실태 및 민관협력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의원) 의뢰로 본 보고서를
『충남 농촌유희공간 활용실태 및 민관협력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1.

연구기관명 :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연구책임자 :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공동연구원 : 박진하 지역순환경제센터 실장

연구보조원 : 배재은 지역순환경제센터 팀장

보 조 원 : 김완택 지역재단 기획관리실장

목차

0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2. 연구 범위 및 추진절차	6
1) 연구 범위	6
2)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7

0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과 과제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이해	11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목적 및 예산 현황	1 1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별 세부지침 현황	2 1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관련 조직	4 1
4) 전국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실태	8 1
2. 충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9 1
1) 충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체 추진현황	9 1
2) 충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현황	1 2
3)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2 2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제도화 동향	6 2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지원 조례 제정 현황	6 2
2) 농촌 유희시설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정책사업 현황	0 3
3) 지자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 현황	5 3

03

충남 농촌 유희공간 운영실태 조사결과

1. 조사개요	39
2. 예비 조사결과	41
1) 예비 조사개요	41
2) 예비 조사결과	41
3. 농촌 유희공간 운영실태 조사결과	44
1) 당진시 고대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44
2) 예산군 웅봉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64
3) 홍성군 결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94
4) 보령시 청라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15
5) 청양군 남양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45
6) 서산시 운산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75
7) 부여군 은산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95
8) 서천군 장항읍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26
9) 금산군 금산읍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56
10) 공주시 정안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86
11) 논산시 노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17
4. 농촌 유희공간 사례조사 종합분석 및 시사점	47
1) 조사결과 종합분석	47
2) 개선과제 및 시사점	87

1. 중앙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38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선	38
2)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68
2.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정책 연계·협력 강화	88
1)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 필요성	88
2) 충남형 농촌 유희공간 활성화를 위해 정책패키지 운영 방안	90
3.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충남형 민관협력모델	89
1)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충남형 민관협력모델 정립	89
2) 농촌 유희공간의 지역자산화 지원	91

표목차

[표 1-1]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7
[표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1... 1
[표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2... 1
[표 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가사업비 지원분야	2... 1
[표 2-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3... 1
[표 2-5]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3... 1
[표 2-6] 시군역량강화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4... 1
[표 2-7]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계획지원단	7... 1
[표 2-8] 농촌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점검 대상지구 및 시설물 점검 실적	8... 1
[표 2-9] 충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0... 2
[표 2-1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현황	1... 2
[표 2-11]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2003년~2014년)	2... 2
[표 2-12] 시군별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2003~2014년)	3... 2
[표 2-1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2015년~2021년)	4... 2
[표 2-14] 시군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황(2015년~2021년)	5... 2
[표 2-15] 지역별 조례 제정 현황(2021.09.현재)	6... 2
[표 2-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1.09.현재)	7... 2
[표 2-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주요내용	9... 2
[표 2-18] 농촌 유희공간 연계 활용 가능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 3
[표 2-19] 충남 시·군 조사지역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주요내용	2... 3
[표 2-20] 충남 도내 시·군별 평생교육 관련 조례 주요내용	3... 3
[표 2-21] 충남 시·군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현황	5... 3
[표 2-22] 충남 시·군별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 현황	6... 3
[표 3-1] 충남 농촌 유희공간 사례조사 종합결과 정리	0... 8
[표 4-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비교1	3... 8
[표 4-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비교2	5... 8
[표 4-3]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7... 8
[표 4-4]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8... 8
[표 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충남 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501

그림목차

[그림 2-1] 충남 시군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현황(2003~2021)	1..... 2
[그림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제정 추이	0..... 3
[그림 4-1]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정책 연계·협력 방안 예시	0..... 9
[그림 4-2] 범부처 생활SOC 복합화 지원 방향 개념도(예시)	3..... 9
[그림 4-3] EU LEADER 지역활동가그룹의 구조와 파트너십	9..... 9
[그림 4-4] 충남형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모델	001



제1장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범위 및 추진절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농촌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 정부는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농산어촌 지원사업 추진 중
- 최근 귀농·귀촌인 증가로 인해 농촌인구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농가 및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산어촌 지역이 위기에 직면함
-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농산어촌의 기초인프라 확대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지원

■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부진

- 정부는 매년 농산어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운용 자율성을 부여하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부실 및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시설물 운영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¹⁾
- 충남도 역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마을 및 권역단위로 10억 원에서 3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촌생태마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어촌뉴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종료 후 운영 및 시설관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부지역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어 유희 시설 활용방안 및 시설관리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없이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감사원(2019),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원보고서.

■ 농촌지역 유희시설(또는 저활용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종료 된 유희시설 또는 저활용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설치된 시설물이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충청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촌지역 유희시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부처별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촌지역 유희시설 활용 실태 파악을 통해 부처별 사업 간 연계·협력 방안 마련 시급

2) 연구목적

■ 충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유희화 원인 파악

- 충남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실태 파악
- 다만, 농촌과 어촌, 산촌 등 다양한 부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농촌지역 대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국한하여 현황을 정리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농촌 거점시설들이 유희화되는 원인을 사업 전체 추진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함

■ 농촌 유희시설 운영·관리 실태 표본조사

-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운데 읍·면단위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대상으로 유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함
-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핵심 생활단위인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촌 주민 삶의 제고를 위한 필요한 주요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임
- 충남 도내 100여개 이상 읍면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시군별로 사업이 종료된 지구 또는 2021년 사업 완료예정 지구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함

-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사업 종료된 지구에 대해 유희공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으나, 향후 유희화 우려가 있거나 유희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희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함
- 충남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해양수산부 관할 일반농산어촌지역인 태안군과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계룡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실적이 낮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농촌 유희공간 운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농촌 유희공간 발생원인 진단
- 읍면 거점시설 우수 활용사례의 시사점 도출
- 민간과 행정 각 주체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리
- 농촌 유희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 농촌 유희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민관협력 방안

- 농촌 유희시설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 농촌 유희시설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부서 간 협력방안
- 농촌 유희시설 활성화를 위한 민간 역량강화와 조직화 방안
-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광역단위 농촌 유희시설 활성화 모델 발굴

2. 연구 범위 및 추진절차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년 기준으로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종료예정인 사업지구 선정

■ 공간적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관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충남 13개 시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낮고, 사업 종료지구가 아직 없는 천안시와 아산시
시는 본 실태조사에서 제외함
- 해양수산부 관할지역인 태안군과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계룡시 제외

■ 내용적 범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관 및 전국 추진현황
- 충남 도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 충남 도내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 충남 도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실태 파악
 - 11개 시군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종료 지구 및 2021년 종료 예정지구를 대상으로 실시
- 충남 도내 읍면 단위 시설 운영사례 분석
 - 사업추진 주체 간 협력(민민, 민관, 외부 용역사 등) 여부
 -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주도성과 행정 부서 간 관련사업 연계·협력 여부 등
- 농촌 유희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과제방안 검토
- 2021년 2월 제정된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농촌유희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

2)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 본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전 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운데 2015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본 연구에서 농촌 거점시설이 유희화 되는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접근함
 - 정책과 제도의 문제, 민간주체 간 협력의 문제, 연계 사업 간 협력의 문제 등 농촌 거점시설 유희화와 연계된 다양한 과제를 진단함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제, 충남도의 정책모델 발굴 등 농촌 유희공간 활성화 방안 제시

[표 1-1]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제2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과 과제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이해
2. 충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제도화 동향

제2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과 과제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이해²⁾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목적 및 예산 현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목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편성 현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전국의 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어촌지역 10개 시·군은 해양수산부 별도 지침에 따름)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자체자율계정,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으로 구성)에 예산이 편성(국고 지원비율 70%)되며 12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주체임

[표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256,220	1,322,278	748,384	876,257
국 고	879,351	925,595	523,869	613,380
지방비	376,869	396,683	224,515	262,877

※ 자료 :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2)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를 참조하여 정리

[표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 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시·군·역량강화	농촌신활력 플러스
지원한도 (억원)	150+a 이하	40 이하	3+a 이하	70 이하
사업기간 (년)	5 이내	5 이내	1 이내	4 이내

※ 자료 :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서

[표 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가사업비(+a) 지원분야

구분	지원분야
농촌중심지활성화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 10억원 시·군청 소재지 읍, 地 중심지(읍·면)와 연계 시 : 30억원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원
시군연락강화	중간지원조직 등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 1억원 (이 경우 매칭되는 지방비 범위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건비 지원 가능)

※ 자료 :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서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별 세부지침 현황

■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 예산 지원분야는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 마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 + 중심지~마을연계프로그램) +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서비스 수용기능 확대)
- 배후마을에 대한 시설 투자는 제한된 경우(배후마을에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기획되고, 해당 프로그램이 기본계획 협의를 통해 승인되는 경우)에만
총 국비지원액의 10%까지 가능

[표 2-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150+α 이하	5년 이내	30% 이내

※ 총사업비의 10%이상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전달(S/W) 계획반영 필수

※ 자료 :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서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
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 일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집약재편하여 원스톱 서비스 공급
가능한 인프라 우선 구축(365생활권,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 지역소득증대사업 추진 불가(기타 기능별 사업 추진 가능)
- 2단계 사업인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은 1단계 사업에서 추진 불가
- 시·군내 1·2계층 읍면은 사업 신청 불가

[표 2-5]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40 이하	5년 이내 + α	30% 이내

※ 자료 :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서

■ 시군역량강화

-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 주민, 현장 활동가 등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 지원

-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촌정책, 중앙지방의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S/W 사업 지원
 - 사후관리 점검 부진지구 활성화 컨설팅교육
 - 유희시설물 대체 운영방안 관련 컨설팅교육
- 사군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마을만들기 등 지방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장포럼 등, 총사업비의 20% 내)
- 지원제외사항으로는 시설물 설치비용 지원 불가, 공무원·주민·발전협의회·지문위원회 등 일체의 해외연수 비용(교육비에 포함된 경도 포함) 지원 불가,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 불가,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보험료 등 경상비, 인건비 등) 지원 불가, 사군 및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축제·행사·홍보 사업 지원 불가, 담당공무원 출장비 지원 불가,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운영비 및 예비계획 수립비 지원 불가

[표 2-6] 시군역량강화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3± α 이하	1년 이내	-

※ 자료 :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서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관련 조직

■ 추진위원회

- 대상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운영기간은 신규 사업 기획 시부터 완료 시까지 가능
- 구성원은 사군의 전담부서, 주민위원회, 서비스 공급·전달 주체,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



- 추진위원회 내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과를 구성 할 수 있음
- 기능은 의사결정기구임
 -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필요시마다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성과목표 및 추진과제의 설정, 사업대상자내용물량의 결장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결장조정
 -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단계에서 지역사회 내 의견 조정 및 갈등 해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등을 진행
-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을 미치는 위원은 구성원에서 제외
- 지원규모는 없으며 시·군 주도로 운영함

■ 주민위원회

- 대상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운영기간은 신규 사업 기획 시부터 완료 시까지 가능
- 구성원은 읍면 소재지 및 배후마을 주민으로 구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주지역(중심지-배후마을), 연령, 성별, 종사 분야 등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성
- 기능으로는
 -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단계에서 중심자기초거점 및 배후마을 주민을 대표 하여 사업에 대한 의견수요를 사군에 제시하고, 설문조사 등 사군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지원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군은 주민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역사회에 전달공유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갈등요인 발생 시 갈등해결을 위해 주민을 대표 하여 중재자로서 의견 조율, 협의 등 추진
 -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로 시행되는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기획설계 시 주민위원회에서 참여
-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을 미치는 위원은 구성원에서 제외
- 지원규모는 운영경비 50 또는 100만원 / 월 범위 내(사업기간 내 지급, 연장기간 포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및 기초생활거점조성 50만원 범위 내, 농촌중심지활성화(통합·선도지구 포함) 10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운영경비는 회의록, 회의사진,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 사무지원조직 / 사무장

- 대상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기존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 진행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 운영기간은 신규 사업 기획 시부터 완료 시까지 가능
- 역할은
 - 추진주민위원회 운영 지원 총괄(회의 개최 및 안건별 결과 정리공유 등)
 - 지역사회 갈등 발생 시 주민위원회와 함께 갈등조정·중재
 - 사업 기획추진과정에서 설문조사 등 주민 대상 의견수렴과정 지원
 -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기획 지원
 - 기타 사업 기획추진과정 전반 지원
- 지원규모는 지구당 사무지원 활동비 183만원/월 범위 내(사업기간 내 지급, 연장기간 포함)에서 사무지원조직 또는 사무장 1인에 한해 지원
 - 사무지원활동비가 월 183만원을 초과 시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126만원 한도 내 지원
 - 보조사업자(사군 또는 위탁시행자)가 사무지원조직 또는 사무장 계좌로 입금
 - 사군은 농촌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 중간지원조직이 사무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직에 활동비를 지급 가능
 - 중간지원조직은 사무지원 활동비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 관련 업무 등의 직접 사업비로만 사용 가능
 - 사군은 중간지원조직 또는 개인 활동가(2개 지구 이내로 한정)가 복수의 지구에서 사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초과하는 지구의 활동비는 차등 지원
- 선발 및 운영은 시장군수가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모를 통해 사무장을 선발하고,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계속 임명 및 해임 여부를 결정, 사무장 운영방법 및 업무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주민위원회, 사무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 계획지원단

- 시·군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시 총괄·공공건축가*를 기초계획단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총괄건축가)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자문·조정,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의 설정·운영 등 수행
 - (공공건축가)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사업의 기획 및 설계 참여,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 등 수행

[표 2-7]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계획지원단

구분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기초계획단 또는 PM단
운영	농식품부	시·도	시·군
지원사업	중심지활성화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전담분야	① 농촌계획(도시계획, 지역재생 등), ② 문화, ③ 복지(노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여성 등) ④ 환경(환경제도·정책, 생태복원, 농촌경관 등), ⑤ 건축(구조·기능, 디자인) ⑥ 경제(농촌산업, 지역경제활성화 등)		
구성원	단장 외 분야별 전문가 전국을 권역 7개 권역으로 구성	단장의 분야별 전문가 중앙계획지원단의 권역별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 시·도 내 사업물량에 따라 5명 이상으로 위촉	단장 외 분야별 전문가 시·군별(5인 이상, 기초계획단) 로 또는 사업지구별(3인 이상, PM단)로 운영 가능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디자인 품질개선 등 위해 건축분야 전문가 1인 반드시 참여
역할	중앙의 신규사업성 평가 지원 및 발전방향 설정 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 사전협의 진행 중심지활성화 부진지구 특별현 장자문 등	시·도의 신규사업성 평가 지원 기초생활거점조성 기본계획 사전 협의의 진행 시행계획 수립·이행과정 모니 터링 준공지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시·군의 예비·기본·시행계획 수립 총괄 진행·조정, 자문, 검토 등 건축기획·설계 발주 과정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 측정 방식 도출 지원 준공지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유의점	시·도는 광역계획지원단 구성·운영 시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음 시·군은 기초계획단/PM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 시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음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을 미치는 위원은 구성원에서 제외		

※ 자료 :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서

4) 전국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실태³⁾

■ 감사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목적은 체계적 사업추진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단계별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점검결과는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에 입력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총 3,212개 지구에 9,505개 시설물이 조성되어 운영 중임
- 감사결과 농식품부 선정기준 및 평가절차 준수 미흡,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선정 사례, 사후관리 소홀, 운영실태 점검 및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 농촌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점검 대상지구 및 시설물 점검 실적

(단위: 개)

구분		1단계 점검						2단계 점검											
		지구 수	시설 물수	시설물 점검 필요성 등급			지구 수	준공 시설물 세부운영실태										지자체 조사결과	
				상	중	하		시설 물수	운영			미운영	비정상운영			조치 완료	조치 중		
									활성화	현상 유지	운영 미흡	방치	용도외	사유화	법 위반				
2017 년	상반기	2,313	7,515	342	2,378	4,795	689	1,931	790	747	187	151	27	27	2	161	233		
	하반기	2,313	7,291	201	2,101	4,989	694	1,974	1,130	734	55	51	3	1	—	28	82		
2018 년	상반기	2,787	7,810	979	1,435	5,396	827	2,196	1,106	899	121	142	21	6	1	42	249		
	하반기	2,787	8,158	764	1,878	5,516	827	2,317	1,121	931	109	122	20	13	1	25	240		
2019 년	상반기	3,212	9,505	894	1,520	7,091	965	2,410	1,241	864	109	153	23	19	1	조치예정			

※ 자료 : 감사원(2019.12).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3) 감사원(2019.12).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정리

2. 충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1) 충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체 추진현황

■ 2000년대 들어 농촌지역개발사업 전국으로 확대 시행

- 농촌지역 핵심공간인 읍면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이 200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농촌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과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됨
- 2015년부터는 기존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합 정비하여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본격 추진됨

■ 충남 147개 대상지역 가운데 76%인 112개 읍면에서 사업 추진

- 2003년 ~ 2014년까지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39개 읍면에서 사업 추진함
- 2015년 ~ 2021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83개 읍면에서 사업 추진함
- 현재까지 총 122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가운데 20개 읍 지역에서 2회 사업을 추진함
 - 보령시 웅천읍, 서천군 서천읍,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예산군 예산읍, 삽교읍, 공주시 유구읍, 금산군 금산읍, 부여군 부여읍, 청양군 청양읍

■ 공주시, 서산시, 금산군 모든 읍면에서 1회 이상 사업 추진

- 시군별로는 공주시, 서산시, 금산군은 모든 읍면에서 1회 이상 사업 추진 완료함
- 천안시는 12개 읍면 가운데 2개 읍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남
- 군 지역 중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서천군으로 12개 읍면 중 8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함
-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등 시 지역 사업 추진 실적은 전반적으로 낮음

[표 2-9] 충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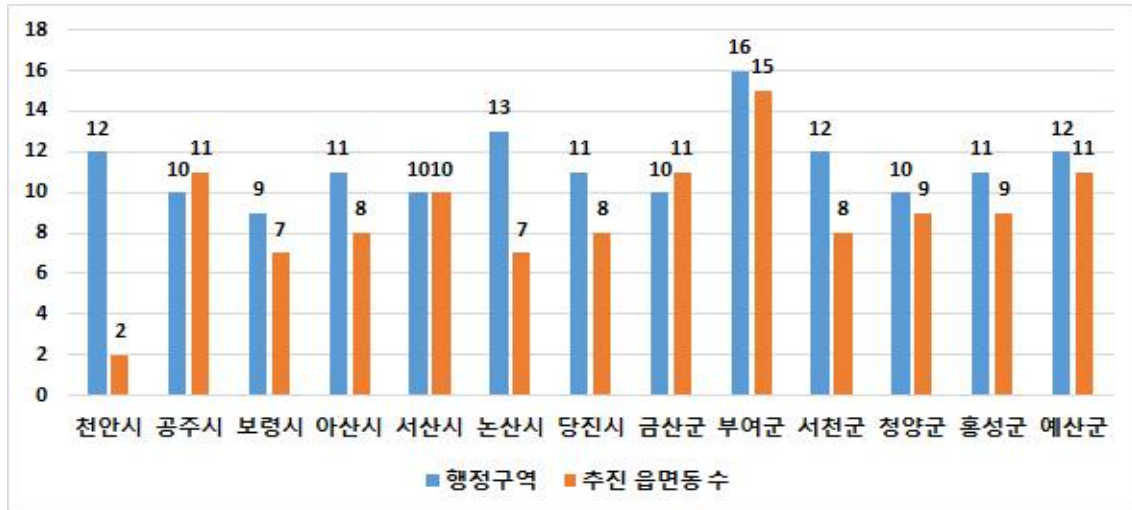
시군	행정 구역 수 (읍면)	추진 읍면 수 (중복추진)	사업 유형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03 ~ ‘14)			농촌중심지활성화 (‘15 ~ ‘21)				
			계	거점면 소도읍 육성사업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계	선도	일반	신규	기초생활 거점육성
합계	147	122(10)	39	13	26	83	7	32	4	40
천안시	12	2	—	—	—	2	—	—	—	2
공주시	10	11(1)	2	1	1	9	—	3	1	5
보령시	9	8(1)	1	1	—	7	1	3	—	3
아산시	11	8	4	—	4	4	—	2	—	2
서산시	10	10	4	—	4	6	—	3	—	3
논산시	13	8	3	2	1	5	—	2	—	3
당진시	11	9	3	1	2	6	—	2	—	4
금산군	10	11(1)	4	1	3	7	1	4	—	2
부여군	16	15(1)	5	1	4	10	1	3	—	6
서천군	12	8(1)	3	2	1	5	1	1	1	2
청양군	10	10(1)	2	1	1	8	1	4	—	3
홍성군	11	9(2)	3	2	1	6	1	3	—	2
예산군	12	13(2)	5	1	4	8	1	2	2	3

※ 자료 :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내부자료

※ 사업 대상지구 : 13개 시군 147개 읍면(22개 읍, 125개 면)

※ 사업 제외지구 : 해양수산부 관할지역인 태안군,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서천군 서면

[그림 2-1] 충남 시군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현황(2003~2021)



2) 충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현황

- 2021년 농촌활력과 전체 예산의 82.5% 농촌생활환경 정비 예산
 - 충남도 농촌활력과 전체 예산 가운데 80% 이상 농촌생활환경정비 예산으로 편성
 - 2021년 농촌생활환경정비 예산의 6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으로 편성
 - 최근 3년 동안 농촌생활환경정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비중	2020년	비중	2021년	비중
총 예산	197,728,135	—	102,128,834	—	122,650,803	—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104,960,840	53.1%	78,885,650	77.2%	101,161,750	82.5%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일반,신규)	40,829,000	38.9%	34,918,000	44.3%	25,392,000	25.1%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872,000	6.5%	11,939,000	15.1%	36,400,000	36.0%

※ 자료 : 충남재정정보공개(2019년~2021년 세입세출예산서), 충청남도 홈페이지

3)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 2003년~2014년 기간 중 39개 읍면, 535,894백만원 지원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충남 도내 39개 읍면에 535,894백만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소도읍 경우 개소당 평균 270억원, 거점면과 소재지는 개소당 평균 77억원 지원함

[표 2-11]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2003년~2014년)

(단위: 백만원)

구분	충남 읍면개수	총사업	소도읍 (03년~10년)		거점면 (03년~10년)		읍·면소재지 (11년~14년)	
			사업읍면	총사업비	사업읍면	총사업비	사업읍면	총사업비
읍 지역	22개 읍	19개 읍	12개 읍	326,002	—	—	7개 읍	69,020
면 지역	128개 면	20개 면	—	—	2개 면	14,120	18개 면	126,752
합계	150개	39개	12개	326,002	2개	14,120	25개	195,772

※ 자료 :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내부자료

※ 사업 대상지구 : 14개 시군 150개 읍면(22개 읍, 128개 면), 계룡시 추가

※ 사업 제외지구 : 해양수산부 관할지역인 태안군,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서천군 서면

-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금산군, 홍성군, 부여군 순으로 많은 사업예산 투입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충남 도내에서 는 39개 읍면에서 사업이 추진됨
 - 지자체별는 금산군 710억원, 홍성군 600억원, 부여군 510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보령시가 130억원으로 사업예산 투입이 가장 적으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예산이 적은 지역은 청양군으로 나타남

[표 2-12] 시군별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2003년~2014년)

(단위: 백만원)

시군	사업구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지방비
공주시	소도읍, 면소재지	36,700	16,800	303	1,797	11,000
보령시	소도읍	13,559	5,000	500	5,024	-
아산시	읍·면 소재지	34,000	23,800	1,748	8,452	-
서산시	읍·면 소재지	30,400	21,280	1,537	7,583	-
논산시	소도읍, 면소재지	49,224	18,874	733	19,617	10,000
당진시	소도읍, 읍소재지	44,100	16,400	1,400	4,600	19,300
금산군	소도읍, 거점면 소재지	71,070	24,609	919	5,342	10,000
부여군	소도읍, 읍·면소재지	51,132	30,309	1,529	7,478	11,816
서천군	소도읍, 거점면, 읍 소재지	38,500	21,200	1,201	3,899	1,220
청양군	소도읍, 면소재지	26,640	14,720	284	1,816	9,820
홍성군	소도읍, 읍·면소재지	59,969	24,527	763	8,269	20,451
예산군	소도읍, 거점면, 읍·면소재지	44,411	27,121	2,106	14,466	-
계	소도읍, 거점면, 읍·면소재지	535,894	259,815	11,023	51,945	156,098

※ 자료 :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내부자료

■ 2015년 이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74개 읍·면, 296,540백만원 투입

-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충남 도내 74개 읍·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은 개소당 평균 40억원 예산으로 기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보다 예산이 축소되어 지원되고 있음
-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역시 70억원까지 지원되었으나, 예산 대비 성과가 낮아 40억원으로 예산을 축소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방식으로 변경됨

[표 2-1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2015년~2021년)

(단위: 백만원)

구분	충남 읍면 개수	총사업	선도지구		신규지구		일반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읍면	총사업비	사업 읍면	총사업비	사업 읍면	총사업비	사업 읍면	총사업비
읍 지역	22개 읍	9개 읍	5개 읍	5,600	4개 읍	65,400	1개 읍	175,140	-	-
면 지역	128개 면	65개 면	2개 면		-	-	31개 면		40개 면	159,010

※ 자료 :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내부자료

※ 사업 대상지구 : 14개 시군 150개 읍면(22개 읍, 128개 면), 계룡시 추가

※ 사업 제외지구 : 해양수산부 관할지역인 태안군,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서천군 서면

■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군, 공주시, 부여군 순으로 많은 사업예산 투입

- 2015년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읍면단위 기초생활 여건이 취약한 군단위 농촌지역에서 사업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됨
- 충남 도내 지자체별로는 예산군 640억원, 공주시 510억원, 부여군 490억 순으로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농촌지역개발에 1,0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 2003년부터 시행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농촌 중심지활성사업을 포함하여 충남 도내에서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됨
-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은 소재지정비사업 및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자체별로 1,0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4] 시군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황(2015년~2021년)

(단위: 백만원)

시군	사업구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천안시	기초생활거점조성	8,000	5,600	—	2,400
공주시	신규,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51,539	36,078	1,725	13,736
보령시	선도,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36,843	25,800	1,235	9,818
아산시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15,536	10,875	302	4,359
서산시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29,164	20,415	687	8,062
논산시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22,000	15,400	400	6,200
당진시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26,644	18,651	430	7,563
금산군	선도,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38,495	26,946	1,461	10,088
부여군	선도,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48,732	34,112	1,236	13,384
서천군	선도, 신규,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39,326	27,528	2,032	9,756
청양군	선도,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43,030	30,121	1,481	11,428
홍성군	선도,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32,314	22,620	1,216	8,478
예산군	선도, 신규,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63,927	44,749	3,289	15,889
계	선도, 신규, 일반, 기초생활거점조성	455,550	318,895	15,494	121,161

※ 자료 :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내부자료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제도화 동향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증가
 - 자치분권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정책에 변화
 - 2020년 농촌협약을 통해 기존에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의 연계 강화 및 지자체 차원의 시설물 관리·감독 강화
 -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종료 후 시설물 운영관리 미흡 사례가 증가하면서 감사원 지적과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 증가
 - 전국 113개 일반농산어촌지역(해양수산부 관할 10개 지역 제외) 가운데 2021년 9월 현재 시설물 관리운영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는 53개 지자체로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참여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관리 감독 강화 요구에 부응, 전국 지자체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지속적으로 증가
 - 충남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4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지역별 조례 제정 현황(2021.09.현재)

지역	조례제정
강원	1개(홍천군)
충북	6개(괴산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4개(공주시, 아산시, 예산군, 부여군)
전북	5개(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전남	13개(강진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화순군, 영광군, 진도군, 광양시, 신안군)
경북	15개(구미시, 문경시, 안동시, 영덕군, 영천시,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포항시,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	14개(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창원시, 합천군)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표 2-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1.09.현재)

지역		조례	제정일자
강원	홍천군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021.06.10
충북	괴산군	괴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016.05.13
	옥천군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2020.09.10
	음성군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2017.11.06
	진천군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2018.12.10
	청주시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조례	2018.10.05
	충주시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2019.05.31
충남	공주시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운영 조례	2020.04.06
	아산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019.12.16
	예산군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021.02.01
	부여군	부여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2021.06.25
전북	남원시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020.12.31
	남원시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021.07.21
	완주군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019.09.26
	임실군	임실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2020.02.04
	정읍시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013.02.22
전남	강진군	강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조례	2021.05.07
	곡성군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12.27
	구례군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	2016.07.25
	담양군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2.19
	무안군	무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2018.12.28
	보성군	보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2019.12.27
	영암군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02.25
	함평군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05.07
	화순군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04.15
	영광군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2019.08.06
	진도군	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2013.08.05
	광양시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021.07.09
	신안군	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020.05.15

지역	조례		제정일자
경북	구미시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2020.10.08
	문경시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0.08.12
	안동시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03.26
	영덕군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020.04.16
	영천시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0.12.28
	의성군	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018.04.12
	청도군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018.10.02
	청도군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012.12.13
	청도군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03.30
	청송군	청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09.18
	포항시	포항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017.12.27
	고령군	고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020.12.10
	성주군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2019.11.07
	예천군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021.05.17
	울진군	울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020.11.16
경남	고성군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020.05.04
	김해시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02.09
	남해군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2.04
	밀양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07.01
	밀양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9.10.31
	사천시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05.27
	산청군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03.29
	산청군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04.21
	의령군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2021.03.24
	창녕군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04.05
	하동군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11
	거창군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2017.12.27
	창원시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0.10.12
	합천군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05.14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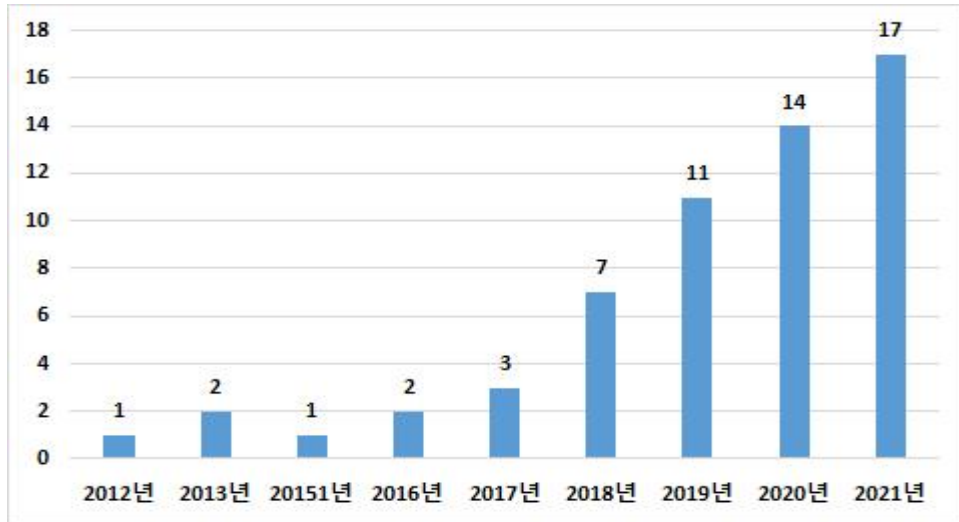
■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증가

-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 지방이양 확정 및 농촌협약 도입 후, 지자체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지원 조례 제정 증가
- 지자체별로 경북(23개 시군 중 13개), 경남(18개 시군 중 12개), 전남(22개 시군 중 13개)이 절반 이상이 조례 제정
- 충남은 15개 시군 중 조례 제정 한 지역은 4개 시군 밖에 되지 않았음
- 광역단위 대응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2-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주요내용

항목	조례내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시장, 군수, 읍·면장, 법인·단체, 민간에게 관리 위탁
수탁자 선정방법	- 일반입찰, 수의계약
관리위탁 기간	- 일반입찰 경우 5년 이내,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에서 갱신 - 수의 계약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평가하여 5년 범위에서 2번이상 갱신
위탁료	-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산 수익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 징수
관리비 등 지원	-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 수리수선비 -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시비 및 수도세 등 관리유지비 (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 - 그 밖에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발 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 보수)
주민협의회 설치 및 구성	- 운영위원회, 운영법인, 운영협의회, 유지관리협의회 등
이용료	-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납부 - 이용료 등 기준은 사회 통상적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승인 받아 정하여 운영
이용료 처리	- 관리에 드는 경비 충당, 시설물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 수입 -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 -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으로 사용

[그림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제정 추이



- 충남 도내 지자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제정 증가
 -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4개 지역에서 제정되었고,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농촌 유희시설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정책사업 현황

- 농촌 유희시설 활성화를 위해 연계되어야 할 정책 지원사업 파악
 -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농촌 유희공간과 연계하여 활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복지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또는 활동)이 바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며, 이는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음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며, 지자체별로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충남 도내 모든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하여 실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평생교육 조례 역시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주민 학습권 보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충남 도내 모든 지자체에 제정된 것으로 파악됨

- 이 밖에 농촌 주민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유희공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사업이 있음
 -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지역주민 공동체 형성과 문화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충남 도내 9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충남 농촌유희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각 조례들의 사항을 통합·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표 2-18] 농촌 유희공간 연계 활용 가능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작은도서관
공주시	○	○	○	○
금산군	－	○	○	○
논산시	－	○	○	－
당진시	－	○	○	○
보령시	－	○	○	○
부여군	○	○	○	○
서산시	－	○	○	○
서천군	－	○	○	－
아산시	○	○	○	○
예산군	○	○	○	－
천안시	－	○	○	○
청양군	－	○	○	－
홍성군	－	○	○	○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1년 9월 기준)

■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운영 방안 검토

- 농촌 유희시설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사업(또는 활동)이 바로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임
 -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자체에 따라 다소 명칭에 차이는 있지만 충남 도내 모든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읍면별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되어 운영·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연간 2천~3천만원 규모의 프로그램비 지원 되고 있음
- 충남 도내 시군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농촌 유희공간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시장·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됨

[표 2-19] 충남 시·군 조사지역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주요내용

구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 조례 내용
조례 제정 여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모두 제정 논산시는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2019.06.10)하고,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
운영 부분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주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와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부여군 조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과 주민자치센터 연계 사례

- 부여군 은산면 사례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시 주민자치위원장 겸 이장단 협의회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연계하여 공간 배치 및 운영계획을 마련함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를 부여군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여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부여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명시됨
 - 또한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활용하여 기초생활 시설물 운영 활성화 계획 마련 필요
- 이 밖에 청양군 남양면과 논산시 노성면 등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존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설물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2-20] 충남 도내 시·군별 평생교육 관련 조례 주요내용

구분	평생교육 관련 조례 주요내용
조례 제정 여부	충남 13개 지역(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평생교육 조례 모두 제정
경비지원	시장·군수는 평생교육을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	(설치)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 기관, 단체, 시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축제와 평생교육프로그램 심의 등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설치)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법 제21조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평생교육 관련 인력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평생학습센터와 연계 운영 방안 검토

-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는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는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도내 모든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파악됨
- 최근 평생교육법 제21조에 근거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할 수 있게 됨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평생교육 관련 인력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과 평생학습센터 연계 사례

- 공주시 정안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정안뜰복합문화센터를 정안면 평생학습센터로 공주시에서 지정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하고 있음
- 공주시 예산 상의 문제로 인건비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으며,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공간을 활용하는 범위에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향후 평생학습지원조례에 근거 시설물을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관리와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작은도서관과 연계 운영 방안 검토

- 농촌지역에서 주민 수요가 많은 공간 가운데 하나는 작은도서관으로 최근 중소지역에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문화활동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음
- 충남 도내에서는 9개 지자체가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시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 방안 검토 필요

[표 2-21] 충남 시·군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주요내용
조례 제정 여부	충남 9개 지역(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
지원	작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운영인력	작은도서관은 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한다.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자치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탁운영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3) 지자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 현황

- 충남 시군별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에 따라 사업 연계 편차 발생
 - 최근 충남 도내 시군별로 공동체 전담부서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산시, 청양군 등에서는 주민자치와 농촌개발,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 공동체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추세임
 - 공동체 전담부서가 설치된 지자체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읍면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시설물을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관련 부서 간 협조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파악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건설과 또는 건설교통과 등 하드웨어 중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자체의 경우 시설물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발굴 및 부서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건설과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수요

와 활용도를 고려하기 보다는 시설물 건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 종료 후 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이 사업종료 후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생활편의를 제고하는데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연계 운영을 적극 검토 필요

[표 2-22] 충남 시·군별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 현황

구분	담당부서	구분	담당부서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 농촌활성화팀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 마을공동체팀
금산군	건설교통과 - 마을가꾸기팀	서천군	건설과 - 희망마을팀
논산시	마을자치분권과 - 마을사업팀	예산군	건설교통과 - 농촌활력팀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 마을공동체팀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 농촌개발팀
보령시	도시재생과 - 마을공동체팀	홍성군	건설교통과 - 마을공동체팀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 마을만들기팀		

※ 자료 : 시·군 홈페이지



제3장

충남 농촌 유희공간 운영실태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예비 조사결과
3. 농촌 유희공간 운영실태 조사결과
4. 농촌 유희공간 사례조사 종합분석 및 시사점

제3장 충남 농촌 유희공간 운영실태 조사결과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1년 8월 ~ 9월

조사일자	조사대상지역	조사일자	대상지역
2021. 08. 05	당진시 고대면	2021. 08. 26	부여군 은산면
2021. 08. 10	예산군 응봉면	2021. 08. 26	서천군 장항읍
2021. 08. 10	홍성군 결성면	2021. 08. 27	금산군 금산읍
2021. 08. 12	보령시 청라면	2021. 09. 02	공주시 정안면
2021. 08. 12	청양군 남양면	2021. 09. 07	논산시 노성면
2021. 08. 13	서산시 운산면		

■ 조사대상 선정

- 2015년부터 추진 중인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읍면 가운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2021년 완료예정지구 가운데 시군별 1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 관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중인 태안군과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계룡시 제외하였으며,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완료지구가 없는 천안시와 아산시 는 본 조사에서 제외

■ 조사방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과 사무국장과 대면 인터뷰

■ 주요내용

- 사업 추진배경과 추진주체
- 주민위원회 구성방식과 주요 참여자
-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발굴 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해도
-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주체의 역할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추진주체 간 연계성
- 운영현황 및 당면과제
- 행정의 사후관리 여부
- 사업추진과정 및 사후관리 시 행정과 주민주체 간 협력 여부
- 지역 내 주민조직 간 협력 여부 및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정리



2. 예비 조사결과

1) 예비 조사개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종료 후 10년 경과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조사
 -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운데 중점 사업이었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10년 가량이 경과한 지역을 선정하여 예비조사 실시
 - 기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과의 차별성과 사업 추진과정과 사후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간 비교를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함

2) 예비조사 결과

- 1단계 : 주민 의견수렴과정
 - 추진위원회 중심 사업도출과 협의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의 한계
 - 참여주민 제시사업, 특히 하드웨어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해 농어촌공사와 용역사에서 수용 불가의견
 - 건축법 등 관련 제도와 규제, 시공방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주민의견 미반영 사례
- 2단계 : 하드웨어 시공 공개입찰과 시행과정
 - 기본계획 수립 후 실행계획과 입찰과정 후 실제 기본계획 내용과 달리 하드웨어가 건립되는 사례
 - 하드웨어 시공업체 선정 시 지역제한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업체를 배제하거나 업체선정과정에 주민참여 배제
 - 기본계획 수립 시 단가와 시공시점 단가 인상 등을 이유로 하드웨어 시공내용 조정 발생 사례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와 관심 저하
 - 건물 완공 후 주민 만족도 저하 또는 완공 후 바로 개보수 등 추가 리모델링 없이 사용불가 사례도 발생

■ 3단계 : 주민 역량강화과정

- 하드웨어가 건립되는 기간 동안 주민 대상 역량강화 진행
- 사업대상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참여 축진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
- 일반적인 이론과 사업의 이해 중심 강의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 관심 저하
- 시설물 운영관리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량강화 부족
- 추진위원회 등 사업 초기 참여한 몇몇 주민 중심으로 역량강화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4단계 : 하드웨어 완공 후 운영 준비과정

- 하드웨어 완공 후 시설물 운영을 위해서는 실내 인테리어와 사무집기와 기자재 필요
- 현재는 이러한 사무집기와 기자재 등은 사업비 집행 불가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편법으로 사업 입찰 후 발생하는 낙찰차액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인식됨
- 시설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부 집기와 기자재를 충분한 갖추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교육장 책상, 의자, 빔 프로젝터, 노트북, 공유주방 조성을 위한 주방기기, 아이들 돌봄을 위한 놀이방 및 북카페 설치 시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 5단계 : 시설물 운영·관리과정

- 사업 종료 후 시설물 운영관리 역할을 담당 할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중단
- 사업 종료 후 주민 대상 별로 역량강화 지원 부재
- 기존 권역단위정비사업의 경우 체험·숙박·가공 등 소득사업이 가능하여 일부 소득이 발생하는 권역은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충당 가능
- 대부분 지역은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충당에 어려움 직면

■ 6단계 : 시설물 노후화 등 감가상각 대응단계

- 사업 종료 후 10년 내외 경과하면서 시설물 노후화 발생, 시설물 개보수 비용적립 없음
 - 엘리베이터 고장, 건물 외벽 균열, 페인트칠 퇴색 등



- 시설물 건립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 리모델링 필요성 발생
 - 교육장만 설치된 시설의 경우 식당과 숙박시설이 연계되어야 활용도 제고
 - 체험시설은 있으나 샤워시설 부족으로 여름철 운영 한계 등
- 시설물 소유자 지자체로 되어 있어 지자체 허가없이 리모델링 불가하지만, 운영책임은 주민에게 전가된 상황
- 권역단위사업은 지자체로 이양, 광역에서 관련자료까지 모두 지자체로 이양된 상황

3. 농촌 유희공간 운영실태 조사결과

1) 당진시 고대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당진시 고대면 용두리 일원에 총 5,177백만원 예산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기간은 2016년~2020년까지 5개년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되어 2021년 준공 예정임

분류	주요 내용
위치	당진시 고대면 용두리 일원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총 5,177백만원 (HW : 4,181백만원 / SW : 350백만원 / 제경비646백원)
사업기간	2016년 ~ 2020년 (5개년) 1년 연장
준공현황	2021년 준공 예정
시행계획서 시설 용도 계획	1층 : 건강관리실, 마을식당, 사무실, 화장실, 로비 2층 : 다목적회의실, 문화복지프로그램실, 화장실, 홀 / 엘리베이터 미설치
시설현황	센터, 용두리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노인정 시설

시설물 현황 사진

		
건물 외관	다목적 회의실	프로그램실

■ 주요내용

- 운영주체는 운영위원회를 비영리 임의단체로 등록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위원 간 갈등, 행정과 용역사 간 주민 갈등 등 추진과정 문제점이 있었으며, 기존 지역사회 주변 시설과 기능 중복 등 운영과정의 문제점 발생함

구 분	주요 내용
운영주체	추진위원장과 위원 일부 중간 교체, 사무장(2019년 하반기부터 근무)
	현재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
추진과정 문제점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위원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 지연(2년간 소요) 사업준비기간 및 초기 주민들과 사전 소통 및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
	행정과 용역사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서둘러 진행하여 주민의견과 차이 발생
	위원 간 갈등과 코로나로 역량강화사업비 집행하지 못해 기자재 구입비로 전환
	농어촌공사가 행정과 주민, 용역사 사이에 중재역할 수행하지 못함(담당자 잦은 교체등)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주민과 상의없이 비용을 임의조정하는 등 공사의 운영관리 문제
운영과정 문제점	2020년 12월 시설 준공 후 임시 운영 중이며, 2021년 사업완료 예정
	당초 수익사업을 전제로 동아리방은숙박실로 주방은 식당과 카페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주변 카페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 발생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건강관리실은 고대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와 기능이 중복되고 탈의실과 샤워실이 없어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주차장이 협소화하여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필요
	주민자치회 주도로 오아시스쉼터 신축 중으로, 기능 중복이 우려되는 상황

2) 예산군 응봉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일원에 총 5,710백만원 예산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 준공함

분류	주요 내용
위치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일원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총 5,710백만원 (HW : 4,306백만원/SW : 645백만원 / 제경비759백원)
사업기간	2017년 ~ 2021년 (5개년)
준공현황	2021년 준공
기본계획서 시설 용도 계획	1층 : 관리실, 창고, 교육장, 건강관리실, 갈대꽃 북카페 2층 : 청소년실, 창고, 동아리방 3개 / 태양광 20kw 설치
시설현황	1층 : 관리실, 교육장, 요리체험실, 공예체험실, 건강체험실, 달팽이 음악실 2층 : 비전룸, 동아리방 3개 / 엘리베이터 미설치 2층 동아리방은 숙박업을 계획하고 설치하였으나. 수익사업 불가로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임대하여 프로그램실로 활용 중

시설물 현황 사진



건물 외관



교육장

예산군 응봉면 시설물 현황 사진



요리체험실



공예체험실



원적외선 건강체험실
(유지관리비용 부담 때문에 옷과 수건은 개인지참으로 운영 예정)



달팽이 음악실
(지역주민에게 임대하여 관리비를 일부 받으며 운영하고 있음)



비전룸



동아리방
(수익사업을 위해 원룸형으로 계획하였으나 수익사업 불가로 현재 지역아동센터 임대를 통한 프로그램실)

■ 주요내용

- 운영조직은 주민위원회며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함
- 시설운영비는 면에서 월 50만원 지원 및 시설 대관료 등으로 운영 중임
- 행정·농어촌공사·용역사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갈등 발생, 잔여예산 사용 등 문제가 있었음
- 향후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및 노인과 공존 가능한 프로그램, 다문화가족프로그램, 청년창업학교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추진 예정
-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익사업 인정, 주민에게 예산 집행 권한, 주민·행정·용역사 협의체제 필요 등을 요청함

구 분	주요 내용
운영조직	추진위원장 4번 교체, 사무장 3번 교체, 운영위원회 14명 사업초기 중심지마을 소수리더들로 사업 추진
	2020년 하반기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주민위원회 운영 중
시설운영비 및 시설활용	면에서 운영비 월 50만원 지원 및 시설 대관료 등 일부 수입 발생
	1층 : 지역주민에게 임대하여 카페 운영(달팽이 음악실) 건강체험실(찜질방)은 유지관리 고민. 찜질방 옷과 수건을 개인이 가져오도록 계획 2층 : 수익사업을 위해 원룸형으로 조성하였으나, 수익사업 제한으로 운영하지 못함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임대하여 지역아동 프로그램실로 사용 중
추진과정 문제점	행정-농어촌공사-용역사 일방적 사업추진 → 주민과 소통 결여 용역사의 일방적인 역량강화프로그램 제시로 역량강화에 실효성이 없었음
	역량강화사업 부진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하여 준공 후 필요한 시설 보수 등에 사용 야외무대를 설치하였는데, 스피커와 앰프시설 부재로 추가 설치, 전력사용량 계산 착오 등
향후계획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 노인과 아동 공존 프로그램 구상
	다문화가족프로그램, 청년창업학교 등 연계프로그램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 예정
요청사항	행정에서 지원하거나 관련 조례 제정으로 수익사업 인정 필요
	주민, 행정, 용역사 3자 간 협의체제 필요
	주민들에게 예산 집행 권한 필요

3) 홍성군 결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일원에 총 4,177백만원 예산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함

분류	주요 내용
위치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일원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총 4,177백만원 (HW : 3,012백만원/SW : 600백만원/제경비565백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 (5개년)
준공현황	2019년 준공
기본계획서 시설 용도 계획	*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1층 : 사랑방, 회의실, 화합실, 주방, 부식창고, 체력단련실, 탈의실 등 2층 : 홀, 다목적실, 탈의실 등
시설현황	체력단련실, 사랑방, 회의실, 주방 등

시설물 현황 사진



건물 외관



회의실

■ 주요내용

- 운영주체는 20여명의 운영위원회이며, 활성화되지 않았음
- 시설운영비는 면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충분함
- 주민자치회가 시설에 입주하여 운영관리를 하려고 했으나, 홍성군 조례 상 특정단체 사무실 사용이 불가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음
- 주민자치프로그램 외에도 마을학교, 시니어클럽 이용 등으로 활용 중
- 주민들 사업 이해 부족, 역량강화 미흡, 행정 담당자 잦은 교체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향후 마을 라디오 방송, 지역아동센터 등을 추진 예정이며, 경제사업 및 상근 인력 필요를 요청함

구 분	주요 내용
운영주체	초기 추진위원 40명으로 시작하여 역량강화과정에서 1/3 사퇴 후 20여명으로 운영 토지구입과 센터 위치선정 과정에서 위원 간 갈등 발생
	사업 종료 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제외한 위원 전면 교체로 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사회단체장 중심으로 위원회는 활성화되지 않음 → 사무장(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이 적극적으로 운영관리 당초 주민자치회가 입주 운영관리 전담하려 했으나 홍성군 조례 상 불가하다는 의견
시설운영비 및 시설활용	공과금 등 운영비는 면에서 지원하고, 프로그램은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문제 없음
	주민자치프로그램 연계 운영, 마을학교 연계 운영, 시니어클럽 이용 등으로 활용 중임
추진과정 문제점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역량강화 미흡(사업계획에 적극적 의견 반영 한계)
	행정 담당자 잦은 교체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
향후계획	지역 아동을 위한 돌봄사업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연계 추진 예정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 마을 라디오 방송
요청사항	경제사업 필요 → 주민들에게 봉사과 희생을 요구하면 안됨, 참여에 대한 보상 필요
	상근 인력 필요 → 현재 사무장은 생업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활동 중 시설 관리 및 행정 업무 등 전담인력 지원 절실

4) 보령시 청라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의평리, 소양리 일원에 총 5.043백만원 예산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함

분류	주요 내용
위치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의평리, 소양리 일원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총 5,043백만원 (HW : 3,944백만원/ SW : 449백만원 /제경비650백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 (5개년)
준공현황	2019년 준공
시행계획서 시설 용도 계획	1층 : 힐링실, 건강휴게실, 세미나실, 공동식당, 주방, 사무실, 관리실 등 2층 : 다목적실, 방송실, 회의실, 사무실, 창고 등 별도 시설로 작은도서관 건립, 시 관련부서에서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
시설현황	1층 : 카페, 공동식당, 관리실, 사무실 2개(대한노인회, 원우 경노당) 2층 : 회의실, 사무실 2개 변경사항 : 카페개설

시설물 현황 사진



건물 외관



관리실

보령시 청라면 시설물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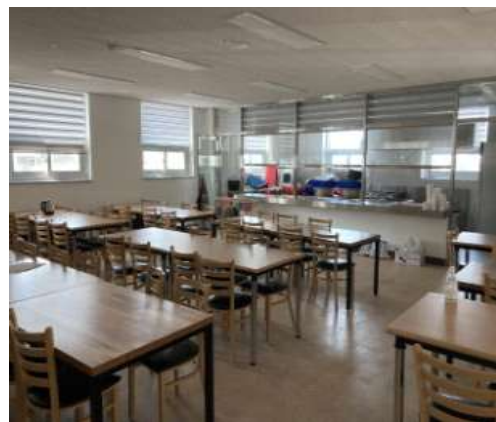
대한노인회 사무실 사용중



원우경노당 사용중
(경노당 운영비 지원금으로 시설 운영비 충당하고 있음)



삼다향카페
(기존 계획에는 없었으나 시설 운영비 마련을 위해
시에 요청하여 2천만원 지원받아 운영하기 시작함)



공동식당
(주1회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중)



다목적 회의실



2층 사무실
(신활력추진단 사무실로 사용 예정)

■ 주요내용

- 운영주체는 삼다향 운영위원회이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함
- 사업종료 후 운영비 지원은 없고, 2021년 현재 석탄협회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시설을 삼다향카페(시에서 지원받음), 대한노인회 사무실, 원우 경노당, 신활력추진단 사무실 등으로 활용 중
- 초기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 역량강화 부족, 기본계획시 설계한 내용 변경 등으로 문제점 발생함
- 후속사업으로 공모사업 발굴 예정이며, 사업지침개선(사업용도변경, 수익사업 등) 및 조례 제정 등 요청

구 분	주요 내용
운영주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전환 시 위원 전원 교체 기존 기관단체장 중심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H/W에만 관심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 총13명, 삼다향 운영위원회 비영리법인 설립
시설운영비 및 시설활용	2019년 12월 사업종료 후 운영비 지원 없음 / 매달 70만원 내외 전기요금 발생
	2021년 석탄협회 기금 500만원 지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 삼다향카페, 대한노인회 사무실, 원우 경노당, 회의실, 신활력추진단 사무실 등으로 활용 중 운영 위원회에서 삼다향카페를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직원 1명 채용) 초기 시에서 2천만원 지원하여 카페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 2021년 6월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한달 결산 결과 1명 인건비와 운영비는 충당 가능
추진과정 문제점	몇몇 지역 소수 인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 / 역량강화사업의 실효성 부족 기본계획 시 교육장과 식당 연계 수익사업을 염두에 두고 H/W 설계하였으나 운영 한계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려 했으나, 복지회관과 기능이 중복되어 중단
	행정-농어촌공사-용역사 문제 → 주민수요 반영 없는 용역사에서 끌고 가려는 경향
향후계획	주민참여예산제 등 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모사업 발굴 예정
요청사항	사업 지침 개선(사업용도 변경, 수익사업, 정식임대허가 등)
	상근인력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필요

5) 청양군 남양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일원에 총 5,950백만원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였으며, 2021년 준공
- 2021년까지 역량강화사업 진행 예정임

분류	주요 내용
위치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일원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총 5,950백만원 (HW : 4,489백만원 / SW : 732백만원/제경비729백원)
사업기간	2017년 ~ 2020년 (4개년)
준공현황	2021년 준공(잔여 역량강화사업 진행, 필요 기자재 구입 등으로 사업비 전환)
시행계획서 시설 용도 계획	1층 : 다목적실, 어린이·청소년 공부방, 금빛사랑방(북카페) 등 2층 : 동아리방 2개, 세미나실, 창고 등
시설현황	1층 : 카페, 코인노래방, 빨래방, 어린이방, 대강당 등 2층 : 헬스장, 소회의실, 동아리방 등 변경사항 : 2층 동아리방 1곳을 댄스교실로 이용하다가 헬스장으로 사용 중

시설물 현황 사진



건물 외관



행복카페

청양군 남양면 시설물 현황 사진



코인노래방



어린이방
(기본계획부터 참여한 학부모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학교 소액사업 연계를 통해 현재 31명의 어린이 및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 중)



소회의실



동아리방



헬스장
(댄스교실에서 헬스장으로 변경하였고, 90명의 주민이 이용중이며, 이용료를 받아서 시설 운영비 마련)



야외공연장

■ 주요내용

- 운영주체는 운영위원회이며, 임의단체로 등록함
- 시설 운영비 및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여부는 알 수 없고, 그 밖에 시설의 헬스장 이용료, 카페 수입 등으로 운영비 마련하고 있음
- 시설은 카페, 헬스장, 어린이방 등 운영으로 활용 중
- 역량강화사업으로 바리스타, 토탈공예 및 천연비누만들기 강사 양성 등 프로그램 진행
- 수익사업으로 카페 운영 문제, 농어촌공사와 문제 등 발생함
- 주민자치회 연계를 통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등 연계사업 추진 예정이며, 향후 상근인력 지원 및 후속 역량강화 필요 제안

구 분	주요 내용
운영주체	초기 추진위원회 일부 위원화 초등학교 학부모를 충원하여 운영위원회로 전환
	현재 운영위원회 22명(주민자치위원, 단체장, 이장, 학부모 등), 임의단체 등록
시설운영비 및 시설활용	전기료 등 운영비 군에서 90만원 지원 및 인력 1명 지원(지속지원 여부는 불투명)
	헬스장 이용료, 카페 수입 등으로 자체 재원 마련 중
역량강화	카페, 헬스장, 빨래방, 어린이방 등 운영(이용료 징수)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어린이방 추가 설치
	바리스타 과정, 토탈공예 강사 양성, 천연비누만들기 강사 양성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운영관리 등 주민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한계 역량강화 잔여 사업비로 하자 보수 및 기자재 구입 등 타 용도로 전환 사용
추진과정 문제점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사업 지침과 정보 공유 부족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카페 사업자등록 추진하였으나 수익사업 금지로 중단
	농어촌공사 문제→시설하자 / 야외공연장에 스피커와 앰프 등 관련 기자재 미비로 보완 빨래방 전력사용량 부족으로 이용 제한, 과도한 견적서 등 주민이 시장조사로 조정 요구
	비용처리 문제 → 사무장 자비로 선처리 후 한달 뒤 후 지급, 사업비에서 집기류 구입 못함
	행정 및 농어촌공사 → 회의 시 참여율 저조
향후 계획	주민자치회와 연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정, 주민참여예산제 등 연계사업 공모 참여
요청사항	상근인력 지원과 후속 역량강화 필요

6) 서산시 운산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일원에 총 5,173백만원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지연되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함

분류	주요 내용
위치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일원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총 5,173백만원(HW : 4,112백만원 / SW : 317백만원 /제경비744백원)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 (4개년)
준공현황	2020년(2년 지연)
기본계획서 시설 용도 계획	어울림광장, 운산구장, 하나로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태하천정비 등 * 다목적회관과 같은 H/W 건립하지 않음
시설현황	운산구장 : 코로나 때문에 정상 운영 불가능, 공용화장실 등 면에서 관리 지역경관사업 : 산책로 조성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음

시설물 조감도

		
어울림광장 조성계획	운산구장 건립	생태하천 정비

■ 주요내용

- 운영주체는 주민위원회이며, 현재 시설운영은 면에서 관리하고 있음
- 추진과정 가운데 하천법 규제, 지역사회단체 간 협력 부족, 농어촌공사 문제, 유지관리비 지원 문제, 정책간 연계 단절, 관급공사 문제 등이 있었음

구 분	주요 내용
운영주체	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와 시 자체로 추진 중인 균형발전사업 주민위원회 각각 구성
	사업 초기 20명 위원으로 시작했으나 1/3 탈퇴→의견충돌 초기 재래시장 활성화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상인회 반대로 사업내용 수정
시설운영비 및 시설활용	운산구장은 준공 후 코로나 때문에 개방하지 못하고 있음
	공영화장실 등 면에서 관리 중
추진과정 문제점	하천 연계 관광지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 있었으나 하천법 규제로 구장으로 전환
	지역사회단체 간 협력 부족→재래시장 복원을 통해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사업 지연되고 내용이 전면 수정됨
	농어촌공사 문제 → 잦은 담당자 교체(사업 기간 중 7번), 참식물 저조, 사업이해도 부족, 주민과 협의없이 일방적 추진, 사업비 대비 시설자재와 시공 부실 등 총체적인 문제 발생 농어촌공사의 사업비 집행 명목 불명확, 시장가격보다 높은 H/W와 기자재 견적 등
	유지관리비 지원이 없어 면에서 비용 부담. 주민참여 저조로 역량강화사업 운영 어려움
	정책간 연계 단절(시 자체 균형발전사업 추진 중인데 중심지사업과 연계성 부족)
	관급공사의 문제 개선, 지역 내 관련분야 주민사업장(건축, 전기 등)이 있음에도 활용 불가



7) 부여군 은산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부여군 은산면 은산1리, 신대1리 일원에 총 5,500백만원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함

분류	주요 내용
위치	부여군 은산면 은산1리, 신대1리 일원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총 5,500백만원 (HW : 4,169백만원, SW : 600백만원, 제경비731백원)
사업기간	2016년 ~ 2020년 (5개년)
준공현황	2020년 준공
기본계획서 시설 용도 계획	1층 : 다목적실, 사무실, 청소년공부방, 이야기방, 홍보관, 화장실 2층 : 동아리방, 대회의실, 비품실, 화장실
시설현황	1층 : 사무실, 이야기방 및 홍보관, 다목적실, 청소년공부방 2층 : 동아리방, 대회의실
	변경사항 : 이야기방을 카페로 활용 및 홍보관과 통합 사용

부여군 은산면 시설물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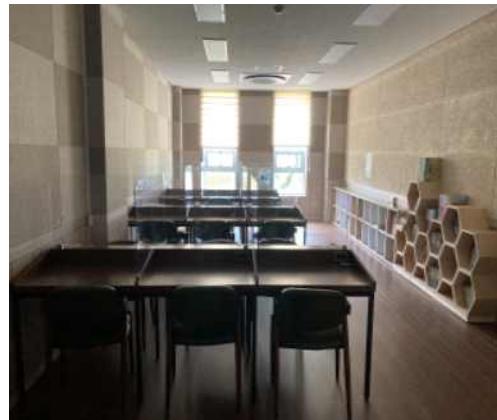
건물 외관



이야기방
(홍보관과 겸용으로 사용)



다목적실
(운영위원회 사무국장의 재능기부로 강사로 활동
중이며, 주2회 컴퓨터실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공부방
(지역 청소년 18명이 이용중이며
월3만원 이용료 받고 있음)



대회의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활용 중)



동아리방
(은산꿈동산마을학교 운영 중)

■ 주요내용

- 운영주체는 지역사회 리더 및 각 분야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임
- 시설운영비는 군에서 지원 및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청소년공부방 등 이용료로 운영되며,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지원
- 시설관리 인력은 시니어클럽, 장애인복지관 일자리 사업과 연계
- 이야기방(카페), 청소년공부방, 다목적실(컴퓨터실), 마을학교,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등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음
- 시설 무료이용 계획을 유료이용으로 변경 문제, 용역사 담당자 잦은 교체 등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음
- 향후 관련 정책사업 연계 제도 개선, 상근인력 지원, 설계 및 건축부터 주민 참여 등 제안함

구 분	주요 내용
운영주체	예비계획 수립 시 30여명 추진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시 군에서 11명으로 축소 요청 현재 위원장은 초기부터 참여, 사업비 절감 위해 4년 동안 사무국장 채용하지 않음(5년차 채용) 현재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 겸직으로 지역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해 운영 중
	지역사회 리더 및 각 분야 주민 등 중심으로 2016년 11명 추진위원회 재편
시설운영비 및 시설활용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 및 시설 이용료(주민자치프로그램, 청소년공부방 등) 부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여 군 관련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시설관리 인력 지원→시니어클럽과 장애인복지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중
	이야기방(카페), 청소년공부방, 다목적실(컴퓨터실), 마을학교,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 하여 활용도 제고 / 모든 시설이 현재 활성화되어 사용 중임
추진과정 문제점	이야기방은 당초 주민소통방으로 무료 이용, 청소년공부방도 지역청소년들에게 무료이용을 계획했으나, 심사위원들이 자생력을 위해 이용료 부과 요구가 있어 이야기방을 카페로 전환 지역 내 카페와 충돌을 최소화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원봉사로 운영 중
	용역사의 잦은 담당자 교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행정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건물화재보험 미가입, 관련 사업 위수탁 등에 제한이 있음
	주민주도 사업이지만 중간에 개입하는 주체가 너무 많음(행정, 공사, 용역사 등)
	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이 아닌 협의회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해 개선 필요
요청사항	관련 정책사업 간 연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상근인력 지원 절실, 현재 사무국장이 자원봉사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H/W 설계와 건축 시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 필요 은산면은 H/W 시공 시 매주 추진위원들이 참여하여 개선 요구

8) 서천군 장항읍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서천군 장항읍 일원에 총 8,000백만원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지연되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함

분류	주요 내용
위치	서천군 장항읍 일원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총 8,000백만원 (HW : 6,108.2백만원 / SW : 1,499.2백만원 /제경비392.8백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 (5개년)
준공현황	2021년 준공 예정(2년 지연)
시행계획서 시설 용도 계획	1층 :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사무실 2층 : 로컬푸드랩 2개, 다목적실, 다목적 강의실
시설현황	1층 : 전시실, 카페테리아, 사무실 2층 : 로컬푸드랩 2개, 다목적 강의실



서천군 장항읍 시설물 현황 사진



전시실
(조명위치, 액자걸이 미설치 등 전시실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



다목적강의실



로컬푸드랩
(요리수업 등 지역 공유주방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공간협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카페테리아
(수익사업으로 계획했지만 수입사업 불가로 공유주방
및 장소대관 등으로
운영 예정)

■ 주요내용

- 운영조직은 운영위원회이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민간위탁 예정
- 시설운영비는 지원되지 않고, 시설은 전시실, 카페테리아, 로컬푸드랩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음
- 추진과정 가운데 로컬푸드랩실 공간 협소, 전시실 시설 등 설계 비효율적, 행정·농어촌공사·용역사 문제, 기존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 등 있었음
-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사업모델 발굴 통한 수익사업 추진 예정

구 분	주요 내용
운영조직	당초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전면 교체(조합이사회 13명으로 구성)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행정 민간위탁 예정
시설운영비 및 시설활용	전시실 운영
	카페테리아, 로컬푸드랩실 → 공유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활용도는 미지수
추진과정 문제점	로컬푸드랩실은 공간 협소, 전시실은 조명위치, 액자걸이 비설치 등 설계부터 비효율적 사업 초기 총괄PM교수 주도로 공간계획 수립, 초기 참여자들이 사퇴 후 참여자들은 사업 추진과정을 알지 못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다 보니 혼선 발생
	행정 및 농어촌공사, 용역사 → 회의 참석 하지 않고 관심 없음. 용역사 담당자 잦은 교체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가 있지만 사업비가 남아 있는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알 수 없음
	역사문화전시관은 장항 내 다른 공간과 기능이 중복되어 활용도가 낮아 다른 용도로 전환
향후계획	참여주체가 바뀌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
	서천군에서 주민자치회와 연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계획
	법인 설립 후 대관료 등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수익사업 추진 예정
	수익사업 발굴 → 케이터링 등 사업화, 문화장터 및 야시장, 청년그룹 협력



9) 금산군 금산읍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상리, 하옥리 일원에 총 8,000백만원 예산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함

분류	주요 내용
위치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상리, 하옥리 일원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총 8,000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 (5개년)
준공현황	2019년 준공
기본계획서 시설 용도 계획	문화배달부 양성·운영, 움직이는 다락원, 작은영화관 및 문화다방, 건강다방
시설현황	약초시장 지하 리모델링: 건강다방 운영

금산군 금산읍 시설물 현황 사진



건강다방 내부, 회의실, 식당
(약래시장 건물 지하 공간을 리모델링 하였고, 코로나 전에는 운영이 잘되었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주요내용

- 운영주체는 운영위원회이며, 현재는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별도 H/W사업 없이 사무실 임대를 하여 사용했으나 현재 사용여부 알지 못함
- 문화관광부사업(영화관 건립), 중소기업부사업(청년몰 조성) 연계 추진
- 기존 한국노인회 문화배달부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 종료 후 담당 사무국장 배제, 기존상인과 청년 간 갈등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 향후 타 부처사업 연계, 지속적 운영비 지원 등 요청

구 분	주요 내용
운영주체	초기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전환. 현재는 활동 미미(문화분과•시장분과•창업분과)
	금산약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일부 상인들과 갈등으로 추진에 어려움
시설운영비 및 시설활용	별도 H/W 사업 없이 추진위원회 사무실 임대 사용 → 현재 사용여부 알지 못함
	문화관광부사업 → 영화관 건립, 중소기업부 사업 → 청년몰 조성 등과 연계 추진
	중심지활성화사업 → 약재시장 건물 지하 건강다방 (내부에 회의실, 식당 등 조성)
추진과정 문제점	기존 한국노인회와 활동하던 문화배달부(사업 후 브랜드화)를 사업과 연계 체계화하여 운영 사무국장이 노인회 문화배달부단장으로 중심지사업과 연계 추진 중심지 사업 종료 후 신활력사업 연계, 마을만들기센터 사업화 이후 사무국장 배제 사무국장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자리를 옮겨 활동 중
	사업의 초점이 약재시장 가운데 침체된 시장 건물 활성화에 초점, 청년창업과 연계 구상
	기존 상인과 청년 간 갈등 → 워크숍 등을 통해 완화 시도 최근 코로나 상황과 겹쳐 청년창업상점 철수 등 공동화 발생
요청사항	단일 부처 사업 추진만으로는 활성화에 한계, 타 부처사업과 연계 필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지속적 운영비 지원 필요

10) 공주시 정안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일원에 총 5,472백만원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지연되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함

분류	주요 내용
위치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일원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총 5,472백만원(HW : 4,418백만원 / SW : 300백만원/제경비754백원)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 (4개년)
준공현황	2020년(2년 지연)
기본계획서 시설 용도 계획	기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태양광 설치 (홍보관, 휴게관, 다목적실, 화장실등)
시설현황	1층 : 사무실, 다목적실, 홍보관, 비품실, 2층 : 대강당, 소회의실 야외시설 : 공연장
	변경사항 : 기존 주민자치센터 일부 리모델링, 정안뜰복합문화센터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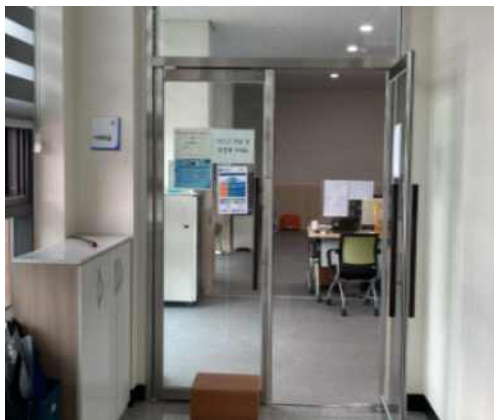
공주시 정안면 시설물 현황 사진



건물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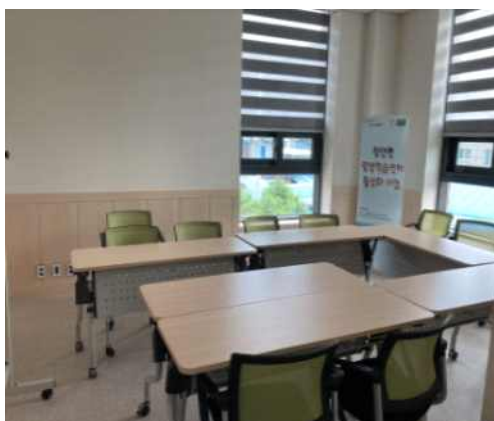
야외 공연장



다목적실
(정안파출소 임시사무실로 사용 중)



홍보관



소회의실



대강당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활용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운영주체는 사업중심지 지구 주민으로 구성된 18명 운영위원회임
- 시설 운영비는 연 600만원 공주시 지원하고 있음
- 당초 사업선정 시 계획은 가점 때문에 기존 유희시설(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이었으나 선정 후 내진시설 공사비 때문에 신축으로 전환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 부족으로 갈등 발생함
- 행정 편의 위주 진행, 주민의견 수렴 생략, 역량강화 미비 등 문제점이 있었음
- 향후 사전·사후 역량강화, 상근인력 지원,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 요청함

구 분	주요 내용
운영주체	추진위원회 25명이었으나 사업 선정 후 18명(중심지1~3구 각각 6명으로 구성)
	코로나로 인해 시설 정상 운영 불가능, 운영위원회 활동하지 못하고 있음
시설운영비 및 시설활용	운영비 연 600만원 공주시 지원
	기존 주민자치센터 : 헬스장, 탁구장
	신축 정안뜰복합문화센터 : 다목적실(정안파출소 임시 사용), 주민자치프로그램
추진과정 문제점	예비계획 시 기존 유희시설 리모델링 시 가점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추진 사업 선정 후 기존 주민자치센터 증축 시 내진시설 공사비 추가 발생하여 신축으로 전환 예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음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전소통 부족으로 갈등 초래 → 주민자치센터 소유권 주장
	행정문제 → 사업선정에 초점을 두고 행정 편의 위주로 진행 사업선정 후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워 갈등 유발(1년간 사업 진행 못함). 담당자 잦은 교체
	사업 선정 후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중심지 마을 이장들이 사업비 분할 주장
	사업 선정 전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역량강화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
요청사항	사전·사후 역량강화 반드시 필요
	지속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상근인력 지원 필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 필요



11) 논산시 노성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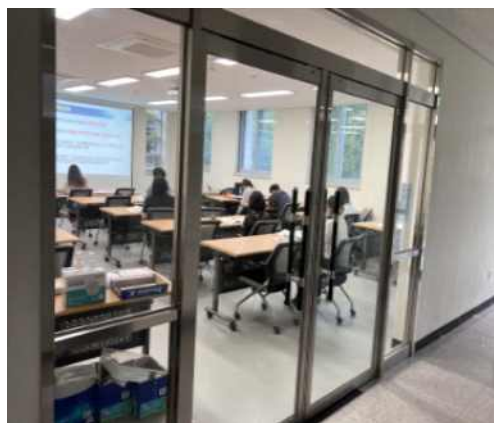
-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입내리, 송당리 일원에 총 4,500백만원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봄 준공함

분류	주요 내용
위치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입내리, 송당리 일원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총 4,500백만원(HW : 3,623백만원, SW : 350백만원, 제경비527백원)
사업기간	2016년 ~ 2019년 (4개년)
준공현황	2021년 봄 준공
기본계획서 시설 용도 계획	1층 : 헬스장, 대강당, 탈의실, 샤워실, 탕비실 등 2층 : 공부방 및 주민복지프로그램실, 카페테리아 등
시설현황	1층 : 사무실 2개, 회의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주방(탕비실) 2층 :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카페테리아
	변경사항 : 헬스장을 사무실 및 회의실로 변경

논산시 노성면 시설물 현황 사진



건물 외관



회의실



프로그램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활용 계획이지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운영되지 않고 있음)



탕비실
(지역 공유주방으로 활용)



카페테리아
(지역 카페들과 중복 기능으로 민원 발생
전통차체험프로그램 등 진행으로 운영예정)



■ 주요내용

- 운영주체는 운영위원회이며, 시설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공동 사용 및 공동 운영 등 주민자치회와 갈등 발생
- 행정 및 용역사 주도 사업추진, 주민갈등, 역량강화 미흡 등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음
- 향후 사전·사후 역량강화, 수익사업 등 요청함

구 분	주요 내용
운영주체	초기 추진위원회는 중심지 4개 마을 4명 이장들로 시작 사업 선정 후 이장들이 주변 주민들을 참여시켜 추진위원회 확대 구성
	현재 운영위원회 → 추진위원회 위원들 일부 교체되어 재구성
시설운영비 및 시설활용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설 운영되지 않고 있음
	사업종료 시점에서 시설을 주민자치회와 공동 운영관리하도록 하면서 갈등 발생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공동으로 사용하여 당초 사업구상과 다소 차이 발생
추진과정 문제점	카페테리아 운영 예정, 회의실, 주방,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시설 활용 중
	사업추진 → 행정과 용역사 아이디어로 주도함 당초 생각했던 사업과 차이가 있었음(기존 권역사업과 동일하게 인식)
	주민갈등 → 배후마을 주민 불만 발생 및 참여율 저조
	행정 및 용역사 → 주민들에게 사업설명 및 홍보 부족, 역량강화프로그램 미흡
	중간지원조직 문제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역할 미비
	시설 건축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 미흡. 주민들이 설계 도면 등 건축관련 지식 부족으로 시공 업체와 소통에 어려움 발생
요청사항	당초 주말장터와 노성참게 복원 등 계획했으나 수익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함
	사전·사후 역량강화 반드시 필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수익사업 불가피

4. 농촌 유희공간 사례조사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조사결과 종합분석

■ 추진체계 및 주민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

- 전반적인 사업추진체계는 지자체-농어촌공사-용역사-주민위원회로 이루어진 체계였으며, 농어촌공사와 용역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위원회의 불만 제기
- 사업 추진배경으로는 행정과 자문교수 등 외부의 권유로 추진한 경우가 많았으며, PM단장 역할은 미미하였고 일부 지역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문제가 있었음
- 주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사전 소통, 역량강화 없이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소수 리더 중심이 주도하여 구성하였음. 이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단체, 배후마을 간 의견충돌로 갈등이 발생함
- 기본계획 수립 시 내부 의견 충돌로 위원장 및 위원 사퇴 등이 발생하여 조사지역 중 절반 이상이 위원장과 위원 등을 교체함
- 역량강화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주민 선택권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나타남
-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역량강화와 사업종료 후 사후 역량강화 필요성 제기함

구 분		주요 내용
추진체계	지자체 농어촌공사 용역사	지자체-농어촌공사-용역사-주민위원회 추진체계 농어촌공사와 용역사의 일방적인 사업주도에 주민위원회 불만 누적
	사업 추진배경	행정과 자문교수 등 외부의 권유로 사업정보를 얻어 추진 PM단장(지역대학 교수) 역할 미미, 일부 지역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문제
	사전소통 및 역량강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사전 소통과 역량강화 없이 주민위원회 구성 주도하는 그룹(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등) 소수 리더 중심 주민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단체, 배후마을 간 의견 충돌로 갈등 발생
주민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내부갈등	기본계획 수립 시 내부 의견 충돌로 위원장 또는 위원 사퇴 등 조사지역 중 절반 이상이 위원장과 위원 등을 교체하는 등 내부갈등 발생
	역량강화	역량강화가 주민 역량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주민 선택권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제시되고 운영되는 한계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역량강화, 사업종료 후 사후 역량강화 필요성 제기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대부분 지역에서 예비계획 수립 시 주민과 사전 소통없이 계획이 수립되었고, 사업 관련 정보제공 부족으로 주민들 사업이해 부족 및 이용률 저조
- 하드웨어 설계 및 시공 과정에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립과정에서 과도한 견적, 주민과 의견 충돌 등이 있었음
- 시설활용도 부분에서는 수익사업을 염두에 둔 공간 배치가 많았으나 수익사업 불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활용도를 고려하지 못한 시공으로 하자 발생, 기존 계획과 변경된 타 용도로 공간을 활용 등을 하고 있음
- 주민들에게 사업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전 협의 및 예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음

구 분		주요 내용
기본계획 수립과정	의견수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비계획 수립 시 주민과 사전 소통없이 계획 수립
	정보제공	지역사회단체와 배후마을 등 사업관련 설명회와 정보제공 부족으로 주민들의 사업 이해 부족, 배후마을 주민들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 저조
	H/W	하드웨어 설계 및 시공과정에 주민 참여가 이뤄지지 않음
		부여군 은산면이 유일하게 시공기간 동안 관련분야(전기, 토목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건축과정을 모니터링 수정·보완을 요청하여 반영
		건립 과정에서 주민의견과 충돌, 변경사항 발생으로 공사비 추가 발생사례
		과다한 견적으로 일부지역 주민들이 시장조사를 통해 비용 수정 사례
	활용도	수익사업을 염두에 둔 공간 배치(교육장, 숙박, 식당, 카페 등)
		시설물 활용도를 고려하지 못한 시공으로 하자 발생 Ex) 빨래방과 야외무대 운영 시 필요 전력부족으로 증설 준공 1년 만에 하자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하지만 비용 없음
		준공 후 타 용도로 공간 전용사례 다수 / 카페운영이 다수를 차지함
	정보공유	사업지침과 관련 규제 등 자료와 정보제공 없음 사업비 집행관련 하여 주민위원회와 정보공유 없음
		사전 협의 또는 예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기도 함

■ 사업 완료 후 나타난 과제

- 필요 집기 구입은 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차액 및 용역사를 통한 비공식적 방식으로 해결하였고, 불편함을 호소함
- 농어촌공사 및 용역사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과 행정·농어촌공사·용역사의 잦은 담당자 교체에 따른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저하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많은 의견이 나타남
- 운영주체는 대부분 운영위원회로 전환했지만, 코로나 등 문제로 대부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법인화를 통한 운영 여부 불투명
- 전반적으로 시설은 어린이방, 마을학교, 회의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 공부방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시설운영관리비는 잔여사업비가 남은 지역은 지원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지원은 불투명하고, 연계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는 지역도 있음. 시설운영관리비 지원 및 상근인력 필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완료 후	필요 집기	집기 구입은 농어촌공사 입찰차액과 용역사를 통해 비공식적 방식으로 해결
	관리감독	사업 추진과정에서 농어촌공사와 용역사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 행정과 공사, 용역사 담당자 잦은 교체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저하
	운영주체	사업완료 시점에 운영위원회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지역사회와 관계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단체와 소통이 부족한 지역은 완료 후 시설활용도 부진 지역사회단체(주민자치회 등)와 연계된 지역이 시설 운영 활성화
	활용도 높은 시설	어린이방, 마을학교, 청소년공부방, 회의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 시설이 활성화 카페를 운영하거나 운영예정인 지역은 인근 상권과 갈등 발생
	법인화	대부분 비영리단체로 운영 중. 예산군 응봉면이 협동조합 설립 장항읍은 주민자치회 연계 실행법인 설립 예정
	민간위탁 추진여부	장항읍이 주민자치회 연계 실행법인 설립 후 민간위탁 추진 응봉면, 결성면, 남양면은 마을학교 등 지역아동센터 연계 위탁 검토
	운영관리비	2021년 사업준공예정지구는 잔여사업비로 공과금 지급, 종료 후 불투명 연계사업 활용 운영관리비 지원(은산면, 청라면 작은도서관, 결성면, 응봉면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상근인력 필요, 인력지원은 부재

■ 주민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 주민기초생활 시설로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침 개선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주민들에게 봉사 및 희생을 요구하는 운영 방식 탈피하여 상근인력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제기함
- 추진체계 개선에서는 사전·사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들 역량강화 필수, 사업관련 정보제공, 행정·농어촌공사·용역사의 일방적 사업 추진 변화 필요 등이 나타남
- 주민자치회, 지역아동센터, 시니어클럽,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마을돌봄교실 등 다양한 지역사회단체 간 협력 및 정책사업 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구 분		주요 내용
요청사항	제도 개선	주민기초생활 시설로 공공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근거 마련
	인력지원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 운영 탈피
		주민자치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등 연계사업 활용 방안 마련
	추진체계 개선	사전 역량강화 필수. 지역사회단체 간 사전 소통과 정보제공 강화
		행정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추진방식의 변화 필요
		행정-농어촌공사-용역사-주민 간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필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확대 필요 / 현재는 기능과 역할 부재
	지침개선	행정 지원 없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사업 불가피
	연계후속 사업	정책사업별 지역사회단체 간 협력을 통한 정책사업 연계·협력 불가피 주민자치회 연계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비 활용 지역아동센터와 마을돌봄교실, 작은도서관 등 연계 운영관리비 활용 시니어클럽 등 노인회 연계 운영관리비 활용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연계 운영관리비 활용
	역량강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주민조직화 지원 지역사회단체 간 연계·협력 지원

2) 개선과제 및 시사점

■ 주민참여 확대 및 조직 간 연대·협력 촉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주체인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지역 내 주민조직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것임
- 그 원인 우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행정과 농어촌공사, 용역사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소수의 리더그룹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음
- 사업 준비과정에서 지역 내 충분한 사업설명회와 주요 주민조직 간 소통과 참여 유도 등 사업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사례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읍면단위 주민자치회가 플랫폼 조직으로서 지역 내 다양한 주민조직들과 소통하여 협력을 이끌어낸 지역에서 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물론 일부지역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주민대표조직을 구성하거나 주민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위상이 정착되도록 그 구성과정을 충실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촌주민 기초생활관련 SOC시설 복합화

- 농촌지역의 인구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별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수요 존재
- 농촌지역 다양한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활SOC를 확충하는 데는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별 관련 사업의 복합화 불가피
-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사업 간 연계를 통해 농촌거점시설의 활용도 제고
- 사례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마을교육학교 등 관련 사업 간 연계가 이뤄진 지역의 시설물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읍면 주민자치회와 실행조직 설립을 통해 기능과 역할 확대

- 읍면단위 기초생활시설로 건립된 하드웨어를 지역자산화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검토
- 읍면 주민자치회⁴⁾와 연계 실행법인 설립을 통해 지역주체들이 시설물의 활용계획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정책 추진체계의 근본적인 전환
- 이 과정에서 주민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부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해 오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지역자산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정리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에 참여하여 직접 실행하는 지역 내 순환시스템 구축 필요

■ 실무인력 지원 및 시설운영관리비 지원 방안 마련

- 농촌거점시설 활성화를 통해 농촌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여건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사람’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됨
- 사례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사무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거나, 작은도서관 또는 마을학교 등과 연계하여 운영관리자를 활용하는 등 관련 정책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근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통해 시설운영비 확보도 가능
- 장기적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과 거점시설을 통해 농촌주민 생활서비스 제공이 목표인 정책프로그램 간 연계를 공식화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촌 거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관리 인력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지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읍면단위 주민대표기구로서 위상을 갖지 못하는 곳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성과 공공성이 부족한 경우 지역 내 다양한 주민조직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대표기구로서 공공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표 3-1] 충남 농촌 유희공간 사례조사 종합결과 정리

구분	운영주체 (법인화 여부)	실무 인력	종료시점	지자체 지원	연계사업
당진시 고대면	운영위원회 (비영리임의단체)	위원장/사무장	2021년	잔여사업비 집행	-
예산군 응봉면	주민위원회 (협동조합)	위원장/사무장	2021년	잔여사업비 집행	지역아동센터 연계 청년창업학교 운영 예정
홍성군 결성면	운영위원회	사무장 (무보수)	2019년	공과금 지원	마을학교 시니어클럽
보령시 청라면	운영위원회 (비영리단체)	위원장 /사무장 (무보수)	2019년	지원 없음 *카페조성 2천만원	신활력추진단사무실 임대 대한노인회 사무실 * 작은도서관 시지원 운영
청양군 남양면	운영위원회 (임의단체)	위원장 /사무장	2021년	월90만원지원 * 계약직 인력 1명	주민자치센터 연계운영 예정 마을학교
서산시 운산면	주민위원회	-	2020년	지원 없음	-
부여군 은산면	주민위원회	위원장 /사무장 (무보수)	2020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마을학교 시니어클럽장애인복지관 사회적 일자리 연계
서천군 장항읍	운영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예정)	사무장	2021년	잔여사업비 집행	주민자치회 실행법인 설립 후 민간위탁 예정
금산군 금산읍	운영위원회	-	2019년	지원 없음	-
공주시 정안면	운영위원회	위원장	2020년	연 6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연계
논산시 노성면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무장 (무보수)	2021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제4장

충남 농촌 유희공간 활성화 및 민관협력 촉진 방안

1. 중앙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2.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정책 연계·협력 강화
3.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충남형 민관협력모델

제4장 충남 농촌 유희공간 활성화 및 민관협력 촉진 방안

1. 중앙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 비교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교를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의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표 4-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비교1

구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사업 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시·도) → 사업총괄 및 전담부서 운영 사업활성화 조례 제정·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도시재생특별법 제9조, 필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 (필수)
	주민위원회 구성·운영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필수)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사업단위’ 주민·상인협의체 구성 (필수)
	광역계획지원단 구성·운영	‘지역단위’ 도시재생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등) 구성 (필수)
	기초계획단(PM단) 구성·운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사회공동체	스마트 거버넌스 구성
	계획수립기관(용역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필수)
계획수립단계 주요 추진내용	추진체계 구축	용역발주 및 사전조치
	계획수립기관 선정	지역현황조사 및 잠재력 분석
	공공건축 및 설계용역 시행	계획의 목표 및 핵심전략 설정
	관련 인·허가	단위사업의 시행계획
	사전 역량강화 추진	재원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계획수립 활동 거점공간 확보	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활성화계획의 변경 및 기타 사항

※ 자료 : 국토교통부(2020.4),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202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주체 필수조건 명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의무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협의 가이드라인(농촌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사가지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비교
 -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 제9조에 근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전담부서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총괄 및 전담부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면 사업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성 부족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구체적 요구 명시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추진단과 행정협의체, 사업별 관련 주체 협의체, 민관협의체 등의 구성을 필수조건으로 제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와 주민위원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광역 단위 계획지원단과 기초계획단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필수조건이 아니며 각 주체 간 역할과 기능 불분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사 활용, 도시재생뉴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의무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시 외부 용역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 진행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 및 현장지원을 외부 용역사에 의존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되었던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 용역사를 통한 일시적 지원 한계 인식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같이 현장지원센터를 두고 지역 활동가 양성 및 일상적인 지원 강화 필요
 - 외부 용역사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 시 신활력추진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농촌협약 도입과 함께 농촌협약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하드웨어에 치중된 가이드라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을 비교해 보면, 계획수립단계

에서 추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공공건축과 설계용역, 시설 관련 인·허가, 계획 수립 활동 거점공간 확보 등 하드웨어에 치중된 가이드라인이 중심 내용임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 현황조사 및 잠재력 분석, 계획의 목표 및 핵심전략 설정, 자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활성화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시행단계에서 시공사 선정 및 추진현황 점검 강조

- 계획 시행단계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역량강화와 시공사 선정 및 추진 현황 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됨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주민 주체 간 협업사업 시행, 역량강화와 주민대상 공모 사업 시행, 사업종료 후 운영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내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표 4-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비교2

구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계획시행단계 주요추진내용	기본·시행계획 고시	단위사업별 시행주체 선정 및 도시 재생추진협의회 구성
	지역역량강화 시행기관 선정	협업사업 시행
	시공사 선정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추진현황 점검	주민공모사업 시행
	—	민간투자사업 유치
	—	신탁·위탁
	—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
	—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준공 및 사후관리단계	중요재산 관리	—
	운영현황 관리	—

※ 자료 : 국토교통부(2020.4),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202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도시재생사업, 환경과 사후 운영관리 계획 수립 강조

-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계획시행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공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방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작업과 그린리모델링 등을 고려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녹색건축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도록 함
-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 계획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 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생활편의시설의 사용·위탁 관리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마을관리협동조합,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

2)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의 구체화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식임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체계 구축

-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의미함
 -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가지고 공익성을 우선으로 활동하게 됨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주민 자조조직을 구성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체계 마련
 -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 하도록 지원
-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시 초기 사업비 지원, 3년 동안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표 4-3]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책 배경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주민 주도 지역재생 통해 직접 변화 실천 및 과정 체감 기회 마련 도시재생으로 공급되는 기초생활 인프라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주민 자조조직 필요
개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
주민협의체와 차이점	주민협의체 :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고 직접 실행하기 위해 행정 및 전문가와 협력하는 주민조직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 도시재생사업 이후 지역사회 지속변화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발제를 발굴하는 주민 공론장이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조직
역할	사업조직, 공론장, 플랫폼
법인형태	비영리법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
성격	공공성, 지역성, 민주성, 개방성
사업모델	공공영역 : 거점시설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임대주택 관리, 집수리사업, 공공서비스, 돌봄서비스, 마을관리소 민간영역 : 시설물 유지관리(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및 카페, 거점시설 기반 게스트하우스, 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소
지원제도 및 정책	지원 정책 : 공공지원 지원 제도 : 지정기부금단체 제도, 총회 의사록 인증(공증) 면제 제도, 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 확대 제도,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제도

※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가이드북(2021.6.기준)

2.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정책 연계·협력 강화

1)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 필요성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 행정안전부⁵⁾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함(2021.10.19.일부터 효력 발생)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
-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표 4-4]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충남은 15개 기초지자체 중 9개 지자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충남 7개 군지역 가운데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증가한 홍성군을 제외한 6개 군 지역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시지역 가운데 공주시와 논산시, 보령시 등이 포함되어 대책 마련 시급

■ 행정안전부,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 유도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주도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 시행을 촉진할 계획
-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보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패키지형태로 투입

-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사업 지원
- 2022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 시행 촉진
-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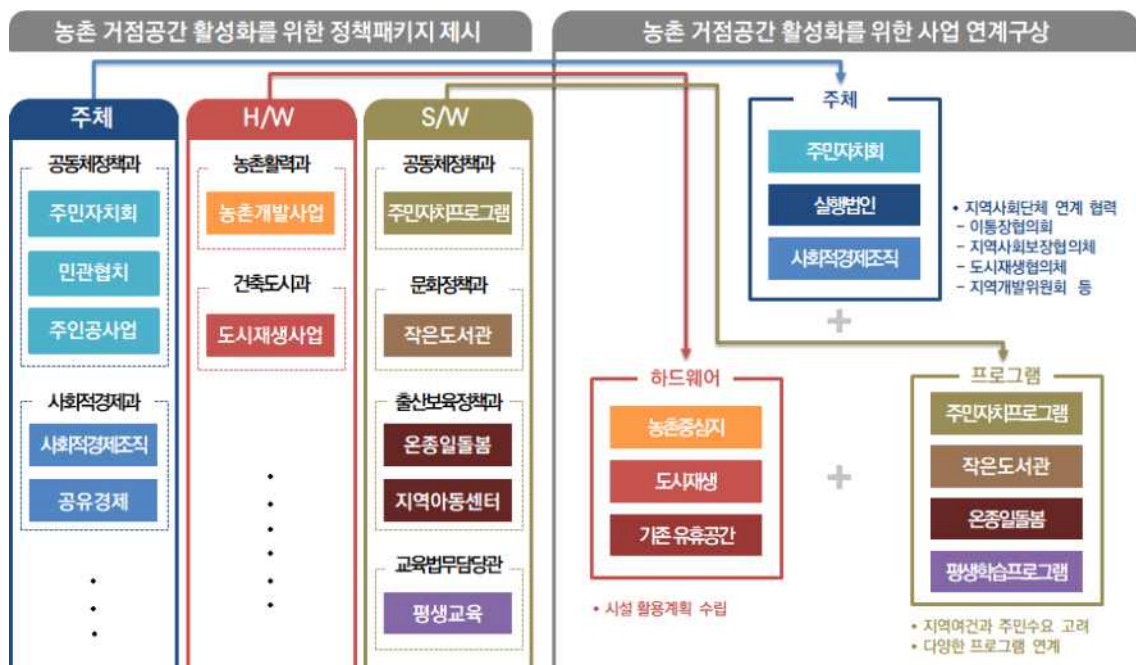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강화

- 각종 재정, 세제, 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법안 협의
-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론 유도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 적극 지원 계획

2) 충남형 농촌 유희공간 활성화를 위해 정책패키지 운영 방안

- 농촌 유희(또는 저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충남형 정책패키지 사업 발굴
 -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 농촌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단순히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하나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임
 - 기초생활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지역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사업 간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부족한 부분 또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안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충남도 광역차원에서 도내 시군별 사업 추진 시 관련 정책 간 연계·협력을 통해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 필요
 - 충남도 부서별 정책사업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유희(또는 저이용)시설 활성화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간 패키지화를 통해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시 관련 정책사업 간 연계·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그림 4-1]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정책연계·협력 방안 예시



(1) 대표성과 실행력을 갖춘 지역주체 형성

■ 지역주민 대표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주체 형성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추진 시 핵심과제는 대표성 있는 사업주체를 형성하는 것임
 - 읍면 단위 주민거점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주민수요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특정 마을(중심지 마을) 리더와 지역사회단체 리더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
- 사업추진 과정은 물론 사업종료 후 실행주체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곤란
 - 지역리더그룹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 결정과정에는 참여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음. 하드웨어 건립은 시공사에서 전담하게 되고, 소프트웨어사업은 용역사를 통해 진행하고 마무리되어 거점공간이 조성 후 운영·관리를 담당할 주체가 부재한 상황임
 - 사업종료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무장은 사업종료 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면서 운영·관리가 진행되지 않아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지역사회단체 간 연대·협력을 통한 사업주체 형성

- 최근 충남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주체로 지역 내 다양한 주민조직들이 연대·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 충남도 207개 읍면동 가운데 100여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읍면동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읍면 농촌지역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사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충남도 공동체정책과를 통해 읍면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위상 제고 및 지역 내 다양한 주민조직과 연대·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원

■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의 실행주체 발굴 및 법인화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개별주체들의 한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행 주체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회 실행

법인을 구성하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자치회 실행법인 지역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의 운영·관리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도록 지원 필요

- 실행법인을 통해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주민생활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원 강화
-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내 청년과 여성 등 인재 발굴과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주도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 사업추진 전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 운영주체 확보

- 사업추진 전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계획수립, 설계·시공, 운영 및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운영 모델 정립
- 다양한 주민조직들의 참여와 이들 조직 간 협의체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주체로 확보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2) 농촌다움과 주민수요에 충실한 생활SOC 복합화⁶⁾ 추진

■ 범부처 생활SOC 복합화 정책 확대

-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생활SOC추진단을 구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
- ‘국무총리 훈령’ (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정의함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수준
 - 생활SOC로 공급되는 시설도 대도시 중심지역 위주여서 지역 간, 지역 내 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6) 관계부처 합동(2019.4.15), 『생활SOC 3개년 계획(안) 2020~2022』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의 64.7%가 비수도권지역으로 파악(2017년, 보건복지부)
- 현행 생활SOC 공급방식은 지역 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행정 부처별 칸막이식 공급체계는 지역의 복합화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
- 최근 지자체들은 부지 부족문제 해소, 이용의 시너지효과 제고 등을 위해 1개 건축물에 여러 생활SOC 시설들을 설치하는 복합화 선호
- 양적성장 중심 투자에서 탈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
- 생활SOC 3개년계획 수립, 범정부적 추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하여 복합화 등 새로운 수요변화에 대응 강화

■ 생활SOC 복합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 방식의 변화

- 부처별사업별 단절 추진이 아닌 복합화 추진으로 부지확보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 및 이용편의성 제고
- 생활SOC사업들은 메뉴판으로 제시, 지자체가 희망사업들을 골라 사업계획 제출, 부처와 지자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후 범부처 공동 지원

[그림 4-2] 범부처 생활SOC 복합화 지원 방향 개념도(예시)



* 범부처 합동(2019.4.15.), 『생활SOC 3개년 계획(안) 2020~2022』.

■ 충남도 부서별 농촌 생활SOC 연계 지원 촉진

- 농촌지역 생활SOC 구축과 연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하드웨어 구축 시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등 농촌지역에

기 구축된 하드웨어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시설물 연계 및 보완 촉진

- 생활SOC 복합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 특히, 기존 각 부처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주체들 간 소통과 협력 필요

■ 생활SOC 복합화를 통한 농촌거점공간 활성화 사례

- 부여군 은산면은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으로부터 프로그램 지원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지역아동 돌봄과 방과후 학교 등을 운영하여 거점공간을 활성화하고 있음
 - 또한 지역 청소년 공부방을 조성하여 지역 내 중학생들의 독서실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 밖에 홍성군 결성면과 예산군 응봉면, 청양군 남양면, 보령시 청라면, 논산시 노성면에서도 주민자치센터,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간 활성화를 위해 노력

(3)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주민자치 강화

■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단위 정책 협업 확대

-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농 부문 간 발전 격차 시정을 위해 기존 부서별·사업별로 실행되어 오던 농촌관련 정책사업 간 연계·협력 촉진
- 범 정부차원의 생활SOC 복합화와 부처별 연계·협력 강화 방향에 맞춰 충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정 및 관련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설치 필요
 - 2021년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발의로 제정된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광역단위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모델 발굴 필요

■ 농촌 주민자치회와 농촌정책 연계를 통한 주민주도 지역활성화 촉진

- 충남 도내 확산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특히 농촌형 주민자치회를 주체로 읍면 농촌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농촌 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그동안 부처별 정책 사업 추진 시 개별적으로 구성되던 주민협의체(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주민위원회 등)를 읍면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하고,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의 대표성과 공공성 확보
-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주민조직인 이통장협의회와 개발위원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촉진

■ 주민자치와 농촌정책 연계 사례

- 부여군 은산면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민조직들이 협력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 공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 시설물 유자·관리는 지역 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노인과 장애인이 매일 시설물 청소 지원
 - 지역이동센터에 공간을 할애하여 지역이동 돌봄과 방과후교실 운영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활동 확대 지원
 - 공동체 카페는 주민자치위원 2명씩 조를 편성하여 순번제로 자원봉사방식으로 운영
 - 시설물 전체 관리 및 운영상황 점검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위원장과 사무장이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특히, 은산면은 시설물 건립과정에서 주민 가운데 건축, 전기 등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공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시설물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조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조사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 간 연계 불가피
 - 일방적으로 참여 주민들이 희생과 봉사로는 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주체의 법인화를 통해 시설물 위탁 및 안정적인 운영지원 방안 마련 필요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2-22 조례 제 49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 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②“농촌주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말한다.“농촌형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28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에 의해 도내 읍면 지역에서 설립된 주민자치회와 시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 읍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
- ④“농촌지원사업”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중앙정부 각 부처 와 지자체에서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농업과 주거, 교 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정보통신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 와 지역개발사업을 총칭한다.“농촌정책”이란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정책 과 사업을 말한다.
- ⑥“정책 협업”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에 의 한 행정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지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농촌정책 협업 촉진 기본 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농촌정책의 각종 시책 수립 시 자치분권 및 주민주 도형 정책 수립과정으로 지자체와 읍면 주민대표기구인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도지사는 농촌 주민 생활여건 개선 과 복지증진 등 농촌정책을 총괄하고, 각종 농촌지원사업 간의 연 계·협력 및 정책 협업 촉진을 위하여 업무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촌정책 관련 부서와의 협업 촉진
3. 농촌정책 관련 지원사업 간의 연계·협력 및 실무 조정
4. 제5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운영
5.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농 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농촌정책 협업 촉진 행정협의회(이하“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2.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실태 점검
 3. 전년도 시행 평가 및 성과 측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 활력증진 및 농촌지원사업 연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농촌활력과장이 된다.

제6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농촌 정책 사업 집행을 위해 충 청남도“농촌활력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실행 자문
2. 지자체 농촌협약 컨설팅 및 모니터링
3.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에 관한 조사·분석
4.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협력 지원
5. 농촌활력 증진을 지원할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6. 농촌 주민자치 및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7.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농촌지원사업 협업 정책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업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광역 단위 유사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사무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 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정책 협업을 통해 주민자치 강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한 도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4900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충남형 민관협력모델

1)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충남형 민관협력모델 정립

(1) 면단위 농촌지역 주민대표기구 및 실행조직 구성

■ 농촌 지역사회단체 간 협력을 통한 대표기구 구성

-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부처별 정책사업 간 연계·협력 불가피
- 부처별 정책사업 간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농촌지역 내 개별화되어 있는 주민조직 간 연계·협력구조 형성 시급
- 최근 충남 도내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와 연계하여 농촌 주민조직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농촌형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읍면단위 이통장협의회, 마을만들기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외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주민조직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단체 간 연계·협력구조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주민자치회 중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 농촌 지역사회 활력 지원을 위한 실행조직 구축

-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내 사업 추진 시 의사결정을 담당할 민간주체와 함께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주체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내부에 사업을 실행한 주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부처별 정책사업이 개별분산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외부 용역사에 의존한 사업추진체계가 고착되고 있음
- 외부 용역사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기존 사업추진체계는 결국 행정과 용역사 주도로 사업기간 동안 활동이 이뤄지다, 사업종료와 함께 지역 내 모든 활동이 중단되면서 시설물 유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

-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LAG(로컬액션그룹)을 의무화하고 있음

■ 농촌지역 여건을 고려한 로컬액션그룹과 민관협력

-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LAG(로컬액션그룹)은 해당 지역 주민, 민간기업, 행정당국 등 LEADER(EU 농촌지역개발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 강조
- 로컬액션그룹은 농촌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사업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관계 형성
 - 참여 주체들 간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가능하다면 참여조직 간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촉진함
- 협약서에는 관련계획을 작성하는데 어떤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얼마나 관련 주체들이 모여 상의했는가에 대한 회의록과 참가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 지역 내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여러 주체들의 대표가 모여 의사결정기구를 형성하고, 결정된 사항을 지역 내 활동가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구조 형성

[그림 4-3] EU LEADER 지역활동가그룹의 구조와 파트너십



* 농정연구센터(2003),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종합적 전략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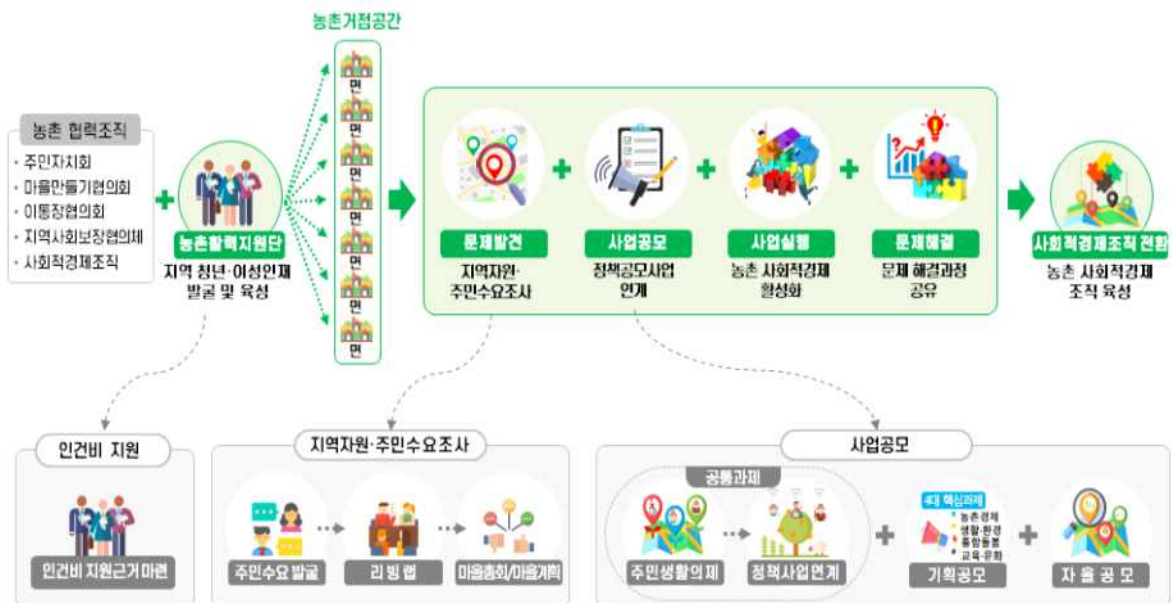
■ 주민자치회 실행법인 조직화로 활동의 공공성 확보

-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총회를 의사결정기구로 사업실행조직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법인화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실행조직으로 운영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연계 실행법인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주민조직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정비

■ 농촌 거점공간의 운영관리 주체로서 실행법인

- 가칭 ‘농촌활력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실행법인을 조직화하고, 실행법인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또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을 통해 건립된 농촌 거점공간의 운영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농촌 거점공간의 시설 유지·관리는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 평생학습프로그램, 방과후돌봄, 작은도서관 등 농촌지역 주민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촌 거점공간을 주사무실로 활용하며,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주민 교육·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써의 기능 강화

[그림 4-4] 충남형 농촌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모델



■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의제 발굴 및 실행으로 농촌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 ‘농촌활력지원단’은 읍면 단위 거점공간을 활동기반으로 주민들의 생활의제를 발굴하여, 정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실행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 담당
- 앞서 제시한 충남형 정책패키지 사업과 연계, 농촌 거점공간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평생학습프로그램,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 이 밖에 농촌주민들의 주요 생활의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실행조직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리빙랩 방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 예시 1) 면단위 농촌지역에 세탁소를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인력을 발굴하여 주민생활서비스 공급 확대
 - 예시 2) 면단위 노인돌봄을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하고 출자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고,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법인이 인큐베이팅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

■ 실행조직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농촌 거점공간을 기반으로 농촌 주민생활 여건 개선 및 농촌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지원역할을 담당한 실행조직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 필요
- 농촌 거점공간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기존 관련 조례 활용방안 마련
 - 주민자치회와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센터 관련 조례에 필요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례가 다수 존재
 -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근거로 실행조직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농촌 거점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기초생활시설을 민간 조직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2) 농촌 유희공간의 지역자산화 지원

- 농촌 유희공간의 지역자산화를 통해 주민자치적으로 지역과제 해결 촉진
 - 현재 지자체장 소유로 되어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읍면 지역자산으로 전환하여 주민자치적으로 지역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검토
 -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이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시설물 운영·관리에서 지자체 역할이 미미함
- 충남도와 15개 시군 모두 공유재산 관리 관련 조례 제정
 -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 모두 공유재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산화 검토 필요

엘리너 오스트롬(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공유재의 비극

“국유화는 공유재를 오히려 황폐화시킨다.”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는 확일적이라서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지인의 협조도 얻기 어렵다. 더욱 큰 문제는 인원과 예산의 제약 때문에 그 많은 공유재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들이 자치적으로 잘 관리해오던 공유재가 국유화 이후 집행 능력 부족, 감시 소홀, 부패 등의 요인 탓으로 오히려 접근 자유의 공유재로 변해버림으로써 더욱 황폐화된 사례도 있다.

“지역공동체에 의한 공유재의 자율적 관리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 공유재원의 특성은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두는 것이 최선이다. 그 핵심은 공유재 이용자들이 행동규칙을 자발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인이 공유재를 이용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분담하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다. 이 규칙은 현지 사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현지인들이 참여해서 완전히 합의한 것이어야 한다.

성공한 공유재 자율관리조직들이 이 규칙의 준수를 감시하고 위반을 제재하는 나름대로의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구성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통상 감시, 제재, 분쟁 해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공한 공유재 자율관리조직들은 아주 저렴하게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기관의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면 규칙의 준수 여부를 상호 감시하는 내부적 방법에 크게 의존한다.



■ 지자체 소유 기초생활시설을 읍면 주민 공동소유의 지역자산화 추진

-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또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소유를 지자체로 함으로써, 주민수요와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읍면주민 공동소유의 지역자산으로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이관할 필요가 있음
- 지금이라도 읍면사회와 농촌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안내심을 가지고 역량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력을 강화하여야 함
-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

■ 당진시 신평면 여성청소년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실행법인 위탁사례

- 당진시에서는 신평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한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역과제를 도출
- 지역 내 유휴공간인 119안전센터 리모델링을 도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한 후,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을 참여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치회 연계 실행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역 내에서 직접 실행하는 실행조직으로서 역할 담당
- 당진시에서는 신평면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에 여성청소년센터를 5년 간 위탁하여 지역 여성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함
- 위탁내용 : 시설운영 및 지역 주민과 연계한 주민공공서비스 제공
- 수탁자 : 신평면 주민자치회 (신평면 주민자치회 위탁운영 적격여부 평가 후 선정)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위탁기간 : 2021 ~ 2025(5년간 / 2회 갱신가능)
- 위탁금액 : 66,044천원(2021년)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사무용품, 무인경비 등) : 34,920천원
 - 인건비(센터관리 / 1명) : 31,124천원
- 신평면 여성청소년자치센터 현황
- 위 치 :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138

- 사업예산 : 721백만원(道 150백만원, 市 571백만원)
- 연 면 적 : 462.34㎡(1층 커뮤니티홀, 2층 북카페, 3층 사무실·회의실)
- 사업연혁
 - ‘17. 7. : 주민자치회 주최 지역 중·고등학생 청소년 100인 토론회 개최(의제)
 - ‘17. 8. : 2017년 충청남도 도민참여 예산 공모사업 신청('18년 300백만원 확보)
 - ‘17. 9. : 자치회 ↔ 신평소방서 간 MOU 체결을 통해 舊 119안전센터 사용 협약
 - ‘18. 1~10 :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주민, 학생, 자치위원 등)
 - ‘18. 11 ~ 2019. 8 :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진행 및 준공
 - ‘19. 9. ~ 12. :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개관식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 ‘19. 11. : 청소년 운영위원회 ‘별하’(중·고등학생 15명) 구성 및 발대식 개최
 - ‘20. 1. ~ 계속 : 지역주민 대상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

[표 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충남 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용
조례 제정 여부	충남 15개 지역(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모두 제정
공유재산 정의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범위	제4조 제1항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써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관리책임	도지사, 시장,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 시장,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관리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고문헌

1.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2. 감사원(2019.12),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원보고서.
3. 관계부처 합동(2019.4.15), 「생활 SOC 3개년 계획(안) 2020~2022」.
4. 국토교통부(2020.4),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5. 국토교통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연구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가이드북(2021.6.기준).
6.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202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7.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를 참조하여 정리.
8. 농정연구센터(2003),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종합적 전략에 관한 연구」.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도시재생법).
10.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농어업인삶의질법).
11. 시·군 홈페이지.
12. 시·군 해당 읍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4.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내부자료.
15. 충청남도 홈페이지, 충남재정정보공개(2019년~2021년 세입세출예산서)
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 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